

2013

부패 · 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  
제12집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37-10

www.acrc.go.kr

2013

#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

## 제12집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

# 발간사



미국의 한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하인리히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한 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번 경고성 징후를 보낸다’는 1:29:300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으로 심각한 안전 사고가 1건 일어나려면 이미 그 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가 29건, 위험에 노출되는 경험(경험)이 300건 정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나 공익침해행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생활속의 작은 부패이던 것이 점차 규모가 큰 부패로 바뀌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큰 부패는 부패에 친숙한 조직문화를 형성해 마침내 그 사회를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부패나 공익침해행위가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되어 더 이상 손을 놓 쓸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 크기가 작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기에 발견해서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사회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는 부패·공익신고는 단순한 신고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부패신고를 처음으로 접수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부패행위가 확인되어 조사기관으로 이첩한 1,035건의 부패신고 사건 중 과반이 넘는 신고가 조직 내부 구성원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신고였습니다. 특히, 내부 신고로 부패행위가 적발되어 기소된 사람의 숫자와 추징·환수되는 금액은 조직 외부인에 의한 신고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도입한 공익신고제도도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식품 유통기한 변조,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등 각종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4,321건이나 접수되는 등 사회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런 자발적이고 선량한 신고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분들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보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총 20건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으며 367건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보상 시스템의 그물을 더욱 촘촘하게 엮어 누구나가 안심하고 당당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열두번째 발간되는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심의·의결한 부패·공익 신고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사건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의 불의에 굴하지 않는 신고자의 용기와 열정, 사건 조사를 담당한 우리 위원회 조사관들의 노력과 고민이 응축되어 있는 소중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면을 빌어 신고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료가 부패 없는 청렴한 나라,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성 보

# 일러두기

「2013년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은 부패 및 공익 침해 신고에 대한 심의·의결 사례를 정리하여 수록한 책자로서 공직자들의 반부패 업무활용에 도움을 주고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사회,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간 한 자료집입니다.

심의·의결사항을 상정순서에 따라 수록하였고 부패신고사건, 공익침해신고사건,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금 지급 등 안건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수록하였으며 보고사항은 위원회 내부업무 관련 사항 및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사안으로 목차만 수록하였습니다.

본 심의·의결례집의 신고사건 등의 자료는 부패 및 공익침해 신고에 대한 신고자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이며, 신고자의 보호와 피 신고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 명을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본 책자에 수록된 사례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기관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본 사례를 임의 판단하여 특정인이나 기관을 비방하거나, 편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CONTENTS

## 제1장 부패신고 사건

### [ 2013년 부패신고 사건 ]

01. 외국대학교 국내유치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5
02.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편취 의혹	6
03. (사)○○학회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7
04. 노인요양원의 요양급여 부당 청구 의혹	8
05. 관급공사 조경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9
06. ○○공사 아파트 시공업체의 공사비 편취 의혹	10
07. 공직유관단체 본부장의 직원채용 및 공사업체 선정과정 비리 의혹	11
08.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보조금 편취 의혹	12
09. 철도 전력유도 대책사업 관련 부패행위 의혹	13
10. 법원 송달료 환급액 편취 의혹 등	14
11. 우수조달물품 혜위등록을 통한 국가예산 낭비 의혹	15
12. 공공기관 민간위탁 용역비 부당청구 의혹	16
13. 민간기업 근무자의 실업급여 부당수령 의혹	17
14. ○○영상위원회 직원의 예산횡령 의혹 등	18
15.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 의혹	19
16. ○○기념사업회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	20
17. 소방차량 자동차보험 계약관련 비리 의혹	21
18. 국비 등 보조사업 관련 비리 의혹	22
19.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23
20. 자영업자 전직 지원 사업 지원금 등 편취 의혹	24
21. 지역교류 활성화관련 국가지원금 횡령 및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25
22. 교육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26
23. 불법광고물 단속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27

# CONTENTS

24. 관급공사 감리원의 뇌물수수 의혹	28
25. 민간병원의 요양급여 등 부당청구 의혹	29
26.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업체 선정과정 비리 의혹	30
27. 관급공사 원청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31
28.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등 의혹	32
29. ○○청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33
30. ○○○ 장병물품 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	34
31. 군용모자 납품비리 의혹 등	35
32. 도로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36
33. 관급공사 하도급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37
34. 공직유관단체장의 횡령 및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 의혹	38
35. 민간업체의 정부용역과제 연구비용 편취 의혹	39
36. AM송신소 공사대금 편취 의혹	40
37. ○○ 전자전 훈련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등	41
38. 어업보상금 부당 편취 의혹	42
39.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부패행위 의혹	43
40. 광고물 단속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등	44
41. ○○ 장성의 예산횡령 및 금품수수 의혹 등	45
42. 재건축조합 등의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 미부과 의혹	46
43. ○○기지 이전사업 관련 용역업체의 용역비용 편취 등 의혹	47
44. 민간업체의 청소용역비용 편취 의혹 등	48
45.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비리 의혹	49
46.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관련 뇌물수수 의혹	50
47. 하수관거 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51
48. 제약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약제비) 편취 의혹 이첩사건 재조사 요구	52
49. 민간업체의 정부용역 연구과제 연구비 편취 의혹	53

50.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54
51.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의혹	55
52. 관급공사(방수) 자재비 횡령 의혹	56
53. 의료장비 도입관련 납품비리 의혹	57
54. ○○시 여성농업인센터 보조금 횡령 등 의혹	58
55. 사회복지단체의 국가지원금 횡령 의혹	59
56. 영어조합법인의 국가지원금 편취 의혹	60
57. 방산장비용 케이블조립체 납품비리 의혹 등	61
5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62
59. ○○체육회 보조금 횡령 의혹	63
60.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 의혹	64
61. ○○위원회의 어선픽해보상금 편취 의혹	65
62. 공립어린이집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66
63. ○○ 사업단 인건비 편취의혹	67
64. 벼 대체작목 육성지원사업비 편취 의혹	68
65. ○○택지개발사업관련 공사비 편취 의혹	69
66. ○○공설시장 운영 관련 부패행위 의혹	70
67. 한방건강센터 임차인 선정관련 뇌물수수 의혹	71
68. 민간업체의 지자체 지원사업비 편취 의혹	72
69. 4대강사업 공기연장 특혜와 지체상금 미부과에 따른 국가예산 손실의혹 등	73
70. 관급공사 원청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74
71. ○○ 직원들의 물품 및 인건비 횡령 등 의혹	75
72.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납품비리 의혹 등	76
73. ○○댐 건설 관련 양식장 이전보상금 혀위 청구 등	77
7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군인의 사무용품 대금 편취 의혹	78
75. 지자체 민간위탁기관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79

# CONTENTS

76. ○○소방서 의용소방대 보조금 및 지원금 부당수령 의혹	80
77. 사립대학교 국고보조금 편취 의혹	81
78.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 사용료 등 횡령 의혹	82
79. 영화제 보조금 편취 의혹 등	83
80. 관급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84
81. 전원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85
82. 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세무조사 축소 의혹	86
8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부패행위 의혹	87
84. 민간기업 근무자의 실업급여 부당 수령 의혹	88
85. 관급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의혹	89
86. 민간어린이집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	90
87. 직무관련 정보이용 이익도모 등 부패행위 의혹	91
88. 국가소송 관련 자문료 과다 지급에 의한 예산 낭비 등	92
89. 사회복지단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등 의혹	93
90. 관급공사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94
91. 청소업차량 용역업체 인건비 편취 의혹	95
92. 영농조합법인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96
93. 장애인복지단체 지회장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97
94. 민간기업 근무자의 실업급여 부당 수령 의혹	98
95.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금 편취 의혹	99
96. 관급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100
97. 공직유관단체의 소송지원금 부당 집행 의혹	101
98. 세무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	102
99. 민간위탁기관의 보조금 편취 의혹	103
100. 영농조합법인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104
101.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편취 의혹	105
102. 버스보조금 편취 의혹	106

103. 공직유관단체 이사장의 시설물 불법대관 관련 금품수수 등 의혹	107
104.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108
105. 시니어 창업교육과정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 등	109
106. 민간업체 국고보조금 편취 의혹	110
107. 관급공사 감리의 공사비 편취 의혹	111
108. 사회복지법인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112
109. 민간병원의 의료비 부당청구 의혹 등	113
110. 공직유관단체장의 횡령 및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 의혹 이첩사건 재조사 요구	114
111. ○○개발센터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의혹	115
112. 교(원)장 자격 선진국 교육체험 연수 관련 부패 의혹	116
113. 마을기업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117
114. 군용 탄피 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	118
115. 새농어촌건설운동 보조금 등 편취 의혹	119
116. 공직유관단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120
117. 농민의 영농규모화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등	121
118. 축전지 납품 비리 의혹 등	122
119. 민간업체의 보조금 편취 의혹	123
120. 시내버스 보조금 비리 의혹	124
121. 마을 이장의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	125
122. ○○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	126
123. R&D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	127
124.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정비 보조금 횡령 의혹 등	128
125. 요양병원의 지원금 부정 수급 등 의혹	129
126. 민간업체의 보조금 편취 의혹	130
127. ○○회 국고보조금 횡령 등 의혹	131
128. ○○박람회 버스 보조금 편취 의혹	132

# CONTENTS

129.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당집행 등 의혹	133
130. 민간업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134
131. 해상면세유 부정유통 의혹	135

##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

01. 무용학과 교수 공연료 등 편취 의혹	139
02. 내수면담당 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	140
03. 국책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141
04.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142
05. 산사태 공사비용 부당청구 의혹	143
06. 국립대학교 교수채용 비리 의혹 등	144
07. ○○교장 뇌물수수 및 공용물 편취 의혹 등	145
08.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의혹	146
09.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 유치사업 관련 비리 의혹	147
10.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국가예산 낭비 및 편취 의혹	148
11. 교육청 공무원의 예산횡령 의혹 등	149
12. 공유수면 매립공사 공사비 부당편취 등 의혹	150
13. 사회단체 보조금 횡령 등 의혹	151
14. 장애인심부름센터장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의혹 등	152
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153
16. 지방이전기업유치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등	154
17. 여성합창단연합회 보조금 횡령 의혹	155
18. 다기능 행정선 선박 건조비 횡령 의혹	156
19. 직업전문학교 청년취업 인턴제 국고보조금 편취 의혹	157
20. 민간업체의 해외취업연수사업 교육훈련비 편취 의혹	158
21. 관급공사 공사비 편취 의혹	159

## 제 2 장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 [ 부패신고자 보호 ]

01. 「○○회」 신고자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 관련 신분 비공개의무 위반자 징계요청	165
02. 「○○청」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관련 원상회복 요구	166
03. 「○○교육원」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관련 원상회복 요구	167
04. 「○○교육원장 행동강령위반 신고」건 신고자 보호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168

### [ 부패신고자 보상 ]

01. 「중소기업 대표의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1
02. 「민원담당 공무원과 공모한 보조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2
03.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3
04. 「공직유관단체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4
05. 「사회복지법인의 국고지원금 횡령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5
06. 「○○지구 폐기물 처리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6
07. 「골재 무단채취 및 ○○공사의 묵인」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7
08. 「지방○○청공무원의 혀위출장 등 공금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8
09. 「○○청 관계자의 업무소홀에 따른 예산낭비」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9
10.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0
11.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1
12.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2
1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부당청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3

# CONTENTS

14. 「○○시 영농조합법인의 국고보조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4
15. 「○○ 관광자원화 사업 보조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5
16.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등 사적사용 및 국책연구기관 직원의 공용물 사적사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6
17. 「현역군인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7
18. 「하천정비 공사비 부당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8
19. 「○○시 및 ○○구 청소년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9
20. 「사회복지법인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0
21. 「산업기술 연구용역 사업비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1
22. 「국책과제 정부지원금 유용 및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2
23. 「○○젓갈명산품 육성사업 사업비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93
24.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따른 공공기관 재산손실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4
25. 「장애인 심부름센터 예산의 목적외 사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5
2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공사 관련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96
27. 「조선업체의 정부출연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7
28. 「직업전문학교 청년취업인턴제 국고보조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98
29. 「법원 송달료 환급액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9
30. 「○○보훈병원 요양급여 부당편취 등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0
31. 「○○청 구매단가 부당인상」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1
32. 「지방○○청 및 ○○공단 직원들의 예산낭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202
33. 「중소기업 지원연구비 횡령 등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3

34. 「민간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4
35. 「국립대 교수의 국가 연구용역 사업비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5
36. 「○○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6

### [ 부패신고자 포상 ]

01. 「대학교수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금 횡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09
02. 「공립고등학교 교사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0
03. 「공기업 간부의 ○○사업 관련 입찰방해 등 부패행위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1
04. 「장애인 고용장려금 편취」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2
05.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편취」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3
06. 「○○기념사업회 직원의 금품수수」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4
07. 「사회복지법인의 국고보조금 횡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5
08. 「대기업의 공기업 납품관련 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6
09. 「정부투자기관 납품관련 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7
10. 「누룽지기계 제조설치 공사비 편취」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8
11.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부당 청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9

## 제 3 장 공익신고 사건

### [ 2013년 공익신고 사건 ]

01. 석산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225
02.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의혹	226

# CONTENTS

03. 약국에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의혹	227
04. 골재업체의 폐수유출 및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228
05. 빌딩 공사현장 석면배출 등 환경오염 의혹	229
06.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법령 위반 의혹	230
07. 스테로이드 함유 전문의약품 불법 조제·판매 의혹	231
08. 대학병원 수술실의 무자격 영상 방사선 촬영 의혹	232
09.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 등 의혹	233
10.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의혹	234
11.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의혹	235
12.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의혹	236
13. 도금공장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37
14. (주)OO공장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238
15. OO공사현장 석면 등 건설폐기물 무단배출 의혹	239
16. 공장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40
17. 신부전증 환자 유인 의혹	241
18. OO OO구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242
19.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243
20.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의혹	244
21. 비산먼지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45
22. 토양오염 은폐 및 검사 방해 의혹	246
23. 무허가 냉매가스 판매의혹	247
24. 소나무 무단 벌채 등 산림훼손 의혹	248
25.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의혹	249
26.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250
27. 폐기물 매립장 약취배출 의혹	251
28. 하도급 건설공사 이중계약 및 협의 통보 등 부정 의혹	252
29. 굴 껍질 무단 매립 의혹	253

30. 의료법인 종합병원의 불법 위탁 운영 의혹	254
31.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및 약취배출 의혹	255
32. 건설폐기물 집하장 등 환경오염 행위 의혹	256
33. ○○병원의 무면허 물리치료 행위 의혹	257
34. 광재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258
35.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59
36. 분뇨 수거차량 불법 행위 의혹	260
37.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폐수유출 의혹	261
38. 분뇨영업 허위 허가 의혹	262
39. 불법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의혹	263
40. 땅지분뇨의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64
41. 해양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65
42. ○○고속철도 CCTV설치사업 관련 담합 등 부정 의혹	266
43. 섬유폐기물 불법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67

###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

01. 폐수오염 및 비산먼지 오염 의혹	271
02. 무자격 눈썹 문신 시술 의혹	272

## 제 4 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구조

### [ 공익신고자 보호 ]

01. 건설공사현장의 사망사고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277
02. 서울 ○○구 민간 어린이집 공익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278
03. 「새마을 금고 임원의 부정선거 의혹」 보호조치 신청	279
04. 「○○선정 ○○투표 부정의혹」 관련 보호조치 신청	280

# CONTENTS

05. 「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위반 의혹」 관련 보호조치 신청 .....	281
06. 「○○군 공립 어린이집 공익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	282
07.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공유 의혹」 관련 보호조치 신청 .....	283
08. 「○○ 민간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 공익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	284
09. 「새마을 금고 임원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보호조치 신청 .....	285
10. 「○○교도소 국가기술자격법 등 위반」 공익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	286

## [ 공익신고자 보상·구조 ]

01. 2013년 전원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결정 요약 .....	289
02.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개봉판매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291
03.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1) .....	292
04.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건 관련 보상금 지급(2) .....	293
05. 「의료폐기물의 불법 수집·운반」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294
06.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295
07.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296
08. 「식품유통기한 위조 공익신고」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297
09. 「어린이 과자류 판매 관련 사행성 광고금지 위반」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298
10.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등」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299
11.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환자 소개·알선」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300
12. 「공익신고 등으로 인한 정직기간 급여 등 신청」 건 관련 구조금 지급 .....	301
13. 「김 생산공장의 오폐수 무단 방류 등」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302
14. 「인터넷 쇼핑몰의 가정용 가구 허위·과장 광고 등」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303

15. 「빌딩공사의 석면조사 미실시 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04
16. 「건설폐기물 운반·보관 등 관리의무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05
17. 「건설 폐목재 배출의무 위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06
18.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07
19. 「공장 폐수 불법 배출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08
20. 「가축 분뇨 불법 배출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09
21. 「무허가 토석 채취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0
22.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1
23. 「무허가 작업장에서 도축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2
24. 「기업체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3
25. 「농지의 불법 전용 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4
26. 「양곡 생산년도 허위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5
27. 「공익신고 등과 관련한 정신적 치료비」구조금 구상권 행사	316
28.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3)	317
29. 「식품인증표시의 무단사용 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8
30. 「수산폐기물 불법 해양 투기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9
31. 「양식장 관리 소홀 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20

## 제 5 장 예규개정 등 의결사항

0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323
02. 부패행위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324
0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	325

# CONTENTS

## 제 6 장 기 타

01. 전원위원회 보고목록 .....	329
02. 전원위원회 위원 명단 .....	337
03.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338
04.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안내 .....	339

# 제 1 장

## 부패신고 사건

- 2013년 부패신고 사건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2013년 부패신고 사건





분과2013-6호

## 외국대학교 국내유치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3. 1. 21.)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외국대학 국내분교 교수 등으로서, '09년 ~ '12년경 지방○○ 캠퍼스를 유치하여 ○○부와 ○○시로부터 83억 원을 지원 받아 운영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외국대학 교수 출장비, 숙소 임차료, 관리비, 운영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 약 3억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외국대학 국내분교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직원 인건비 및 숙소 임차료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 약 3억 4,4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확인되어 예산운영 적절성과 환수 등 행정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감사원 및 ○○부,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인건비, 숙소임차료 등을 임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약 2억 200여만 원은 환수 예정.

※ 통보일자 : 2013. 8. 8.

- 부,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감사원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지자체 하수관거 정비공사(민자투자사업) 시행사 대표로서, 맨홀 및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서와 달리 일부 시설물을 미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는 책임감리원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피신고자A의 공사비 편취를 공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일부 구간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피신고자들이 맨홀 및 맨홀 사다리 등을 미설치하는 방법으로 1,043만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가 확인되고, 관로 및 접합부 파손 등 부실공사가 다수 확인되어 전 구간에 대한 부실공사 현장조사 등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조사 중  
※ ○○도, 전 공사구간에 대한 부실공사 현황 조사, 보완공사 완료 후 조사결과 통보 예정

분과2013-8호

## (사)○○학회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1. 21.)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학회 재무이사로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위 학회에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액불상의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는 이○○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를 가장하여 보조금 약 8,000만 원 횡령한 개연성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망한 위 학회 회장 이○○의 단독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재무이사인 피신고자를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3. 12. 11.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위 학회 회장 이○○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의록을 작성 행사한 점 적발(피신고자 ○○부 감사에 불응).  
※ 통보일자 : 2013. 12. 5.
- 회장 이○○ 사망 이후에도 보조금이 유용된 점, 사망자 이○○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의록을 작성 행사한 점 발견되어 수사 중인 검찰에 관련서류 추가 송부(검찰 수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조치 검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노인전문요양기관인 ○○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수천만 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신고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서류를 조작하여 노인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의혹이 상당하여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1억 7,178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 인정되어 ○○시에서 행정처분(지정취소(4개월)) 및 과태료 50만원 부과.
  - 피신고자의 부당편취 금액 환수 진행 중

※ 통보일자 : 2013. 6.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0호

## 관급공사 조경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 21.)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가공한 조경석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건설현장에서 채취한 발파석을 납품하면서 화물차량 당 1~3톤 정도 부풀린 계량증명서를 제출하고 차액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조경석을 납품하면서 차량 당 2~20톤의 중량을 부풀려 조작하고 화물차량 4대에서 219.07톤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 593만 원 이상을 편취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청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 결과, 피신고자는 입찰조건과 전혀 다른 발파석을 납품하고 ○○계량소 등에서 발급한 95건의 계량증명서에서 평균 5톤 이상 부풀려 혀 위의 계량증명서가 발급된 사실 등이 입증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3. 9.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토사량 43,961m<sup>3</sup>를 현장과 약 11km거리에 외부반출 처리한 것으로 설계 변경되었으나, 사실과 다르게 인근지역에 임의 사토 처리하고, 사토량을 허위로 부풀려 설계변경 승인받아 공사비를 편취하였으며, 피신고자B는 현장 감독관으로 이를 묵인하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가적치 토사 43,961m<sup>3</sup> 및 지정사토 물량 3,220m<sup>3</sup>를 허위 반출하고, 흙막이 가시설공사시 띠장, 어스앙카, 정착콘 조립 설치수량 등을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하여 도합 1억 293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외 ○○○ 토사반입반출확인서 위조 혐의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피신고자B 공사감독 소홀행위 ○○공사 감사관실 통보.  
※ 통보일자 : 2013. 5. 23.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2호

## 공직유관단체 본부장의 직원채용 및 공사업체 선정과정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 21.)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1. 9.부터 2012. 12.까지 ○○구청 ○○공단 기간직 직원을 공개경쟁채용을 거치지 않은 채 채용하고, 위 공단 시설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결과, 2010. 7. 20. ~ 2012. 6. 20. 기간직 직원 11명이 비공개경쟁으로 채용되었고, 2012. 5. 경 추정금액 약 6,900만 원의 이송장치 제작 설치공사를 3회 분할 수의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독기관에 감사의뢰 필요성 있음.

### 3. 의결결과

-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감사결과,
  - 공단본부장 : 문책요구, 센터장 : 징계요구,  
계약 담당직원 2명 : 훈계, 인사 담당직원 6명 : 주의
  - 8건 735,010원 환수
  - ※ 통보일자 : 2013. 3. 27.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등은 동 어린이집 영유아가 21인 미만인 경우, 원장 인건비 80% 가 지원되지 않아 이를 지원받기 위해 일부 영유아를 허위로 등록하고, 일부 영유아의 연장보육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건비 및 보육료 등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공공기관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등에 대한 혐의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등을 사기죄 등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3. 9. 23.
- ○○도 감사결과, 피신고자 등을 행정조치(원장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하고, 관련 공무원은 징계조치.  
※ 통보일자 : 2014. 1. 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4호

## 철도 전력유도 대책사업 관련 부패행위 의혹

2분과위원회(2013. 2. 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철도 주변 통신선에 전력유도장해(잡음전압)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하여 ○○공단으로부터 1,000억여 원 이상의 공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신고자B는 전력 유도전압 예측에 의해 위 공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 공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전기열차 운행으로 인한 전력유도장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자들이 유도전압 예측을 위한 각종 용역 수행 시 전파연구소 고시에 위배된 방법으로 유도전압을 측정하여 이를 부풀린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감사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연구원 책임연구원 ○○○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3. 9. 12.
- 감사원 조사결과, 종결처리.  
※ 통보일자 : 2014. 1. 21.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수사결과는 수용하여 종결, 감사원에는 재조사 요구 검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의 소송수행 대리인으로서 소송 종결 후 법원으로부터 환급되는 송달료를 시청에 반환(세입조치)하지 않고 시청 공무원들과 짜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시의 소송수행 대리인 등이 법원으로부터 환급되는 송달료 환급액을 반납하지 않고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하고,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6명의 송달료 환급금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 약식 기소(업무상 횡령)  
※ 통보일자 : 2013. 5. 14.
- ○○도의 조사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의 송달료 환급액 약 5,202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3. 5. 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20호

## 우수조달물품 허위등록을 통한 국가예산 낭비 의혹

2분과위원회(2013. 2.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자신의 회사제품이 무특허 기계장치에서 생산한 것임에도,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청을 기망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하고, 전국의 관공서에 납품하여, 약 3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동종의 선량한 사업경쟁자를 부정하게 배제하는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는 56개 석판석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받았으나, 민원에 따른 ○○청 현장조사 이후, 우수제품에서 탈락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시의 추가 구매 제안이 들어오자 빗살무늬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탈락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약 2억 1천여만 원 이상의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3. 7. 3.
- 청 감사결과, 피신고자가 수정계약 후 계약물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6개월의 거래정지 처분 ※ 통보일자 : 2014. 7. 2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사에서 전국 차량사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한 용역과 관련하여 '전기신호 및 연료주입' 업무를 '08년 ~ '13년까지 3년 단위로 2차례에 걸쳐 위탁 수행 중에 있고, 특히, '11년부터 진행 중인 두 번째 용역의 경우 당초 설계내용과 달리 하여 용역 인원을 적게 투입하고도 서류를 조작, 용역비를 부당 청구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는 매월 단위로 301~313명까지 고용토록 설계 및 비용청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11년에는 월평균 17.6명, '12년도에는 월평균 10.9명을 적게 고용하고도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총 6억 9,023만 원의 용역비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감사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감사원 반송 처리

#### 〈위원회 검토의견〉

- 분과위 재심의(2013-41호)를 통해 수사기관(경찰청) 이첩

분과2013-22호

## 민간기업 근무자의 실업급여 부당수령 의혹

2분과위원회(2013. 2.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A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B사에 입사를 하였지만, 서류상으로 동생을 입사한 것처럼 해놓고 자신은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을 하고, B사에서 C사로 이직하며 동일한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는 ○○부에 허위 신고하여 '10. 6월부터 '10. 11월까지 150일 동안 약 443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11. 10월부터 '12. 1월까지 90일 동안 약 279만 원을 수령하는 등 2회에 걸쳐 약 723만 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어 환수 등을 위해 감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및 추징액 1,181만 원 부과(환수 진행 중), 피신고자 동생 체당금 부정수급액 및 추징액 925만 원 부과(환수 진행 중), 해당 업체 과태료 460만 원 부과(납부완료)  
 (※ 체당금 :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      ※ 통보일자 : 2013. 4. 19.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공무원으로서 ‘11년 8월 ~ ‘12년 12월 ○○영상위원회에 파견되어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인쇄업체 등으로부터 영상페스티벌 행사용 인쇄물, 기념품 등을 제작하면서 제작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수 백만 원 상당의 예산을 손실시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인쇄업체와 기념품 업체 등으로부터 제작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860여만 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 처리 통보  
※ 통보일자 : 2013. 6. 1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26호

##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13. 3. 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 B는 ○○시청 ○○공무원으로서, ○○개발사업자인 C로부터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제공받는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이 있음.

## 2. 의결이유

- 금품제공 내역이 기재된 회계장부 및 공공기관의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등에 대한 혐의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은 ○○군에서 주최하는 축제에서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경호·경비 용역 수주를 받기 위해 피신고자B에게 약 400만 원의 뇌물을 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A가 경호·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도와준 대가로 피신고자B에게 400만 원을 준 점이 확인되고, 피신고자B는 행사비를 지출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한 점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A, B 2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사건 송치(400만원 뇌물공여·수수 확인)
- 도 조사결과, 보조금 지도·관리 및 정산업무 소홀 확인
  - 관련부서 주의, 관련 공무원 4명 훈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31호

## 소방차량 자동차보험 계약관련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3. 3.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소방차량 자동차보험 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화재 ○○대리점과 대부분 계약하여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A업체가 제출하는 견적서에 직인이 없다는 사실 등만을 문제 삼아 배제하면서 B업체와 장기간 수의 계약하여 특혜의혹이 있고, 동일 보험회사 소속의 대리점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보험계약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부 및 ○○청, ○○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당초 명단에 없던 피신고자B를 국외여행에 합류시켜 향응을 제공받고 ○○시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하게 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예산을 편취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C는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A는 피신고자B로부터 동행하며 국외여행을 하면서 향응을 받은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A와 피신고자C는 국외여비 예산의 추가 편성이나 집행 사유가 아님에도 예산을 부당 편성(960만 원)하고 공무국 외여행심사위원회 개최도 없이 관광 및 사적지를 관람하는 등 예산을 낭비 한 의혹이 있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부 조사 결과,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관광 등에 2011년 740만 원의 예산을 부당 편성·집행하고 2012년에도 960만 원의 부당 편성·집행 확인 (○○시 의회 사무국 주의 조치 및 ○○시 의회사무국 담당자 혼계 조치)  
※ 통보일자 : 2013. 9.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33호

##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3.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 B, C는 상호 공모하여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 가옥'을 개보수하면서 인건비와 자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D는 담당공무원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이를 묵인하는 등 유착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사업 신청가옥인 이중재 가옥 본채 20평을 보수하지 않고 별채 13평을 개보수하고 자재비와 인건비를 부풀려 허위 정산하여 보조금 2,500만 원 상당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전통한옥 개보수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불기소 의견 송치
- 부 조사결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2,500만 원 반환 요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되어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부의 ‘자영업자 전직지원 사업’ 등 수탁기관 대표로서 컨설팅 및 교육기간 등을 부풀려 보고하여 550만 원을 허위로 수령하는 등 2,000만 원 가량을 부당하게 수령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하여 국가기관에 대해 예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교육 및 상담시간을 조작하고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과다하게 교육비를 수령하였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수료생 5명을 허위로 수료 보고하고 교육비 400만 원을 타낸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 관련 지원금 540만 원을 허위로 타낸 점 등에 대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3. 6. 21.
- 부 조사결과, 실제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도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지원금 540만 원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조치  
※ 통보일자 : 2013. 7. 9.
- 청 조사결과, 교육수료생 혜택보고 관련 480만 원,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920만 원 등 확인하고 합계 1,450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3. 4. 2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42호

## 지역교류 활성화관련 국가지원금 횡령 및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13. 4. 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2007.2.~2011.2. 월간잡지사 대표인 피신고자B에게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편법지원하고 그 대가로 설·추석 명절에 백화점상품권 및 홍삼세트를 교부받고, 피신고자B는 위와 같이 선물을 공여하고 위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유용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명절 때 선물세트를 받은 점 확인되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특별교부세를 위탁받아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대체 재원으로 출연금을 가장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한 점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 피신고자A에 대한 특별교부세 편법지원의 점은 증거불충분을, 명절에 받은 선물의 점은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
    - 피신고자B에 대한 특별교부세 19억 원 유용의 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구속기소
- ※ 통보일자 : 2013. 12. 23.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2년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교육청 주관 「석면 안정화 비산방지공사 시범사업」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1,7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는 피신고자들이 예금통장을 꺼내들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 1,7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실토향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은 1,700만 원의 명목은 '차용금'이며, 1개월 후 이자 30만 원을 보태어 1,730만 원을 계좌 입금하여 변제하였다고 변명(금융거래내역에 의해 변제사실 확인)하고 있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 통보일자 : 2013. 11.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44호

## 불법광고물 단속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13. 4. 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시 산하 구청 공무원으로서, ○○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불법광고물 부착을 묵인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경감해주는 대가로 광고대행업자인 피신고자B로부터 수회에 걸쳐 적게는 수 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씩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B가 작성해 놓은 업무수첩,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메모장 등의 기재내용에 의해 금품을 수수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광고대행업자가 ○○시 ○○구청 등 6개 구청 광고물정비 업무 6~7급 공무원 11명에게 불법광고물 단속무마와 과태료 감면대가로 7,700여 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관련 공무원들은 약 89만 원~4,0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명 구속, 10명 불구속 기소로 검찰송치

※ 통보일자 : 2014. 2. 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의 감리단장으로서 각 공사 현장소장인 피신고자B로 부터 공공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피신고자B, C는 피신고자A의 묵인하에 공사비를 부당 수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A는 피신고자B로부터 공사 편의 등의 대가로 총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피신고자B, C는 피신고자A의 묵인하에 훗막이 가시설공사를 설계보다 적은 수량을 공사하여 각각 943만 원, 754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A가 피신고자B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각각 뇌물수수 및 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3. 9. 23.
- ○○도 조사결과, 시공업체들이 공사비 1,694만 원을 과다 지급받는 사실을 확인하여 공사비를 감액하고 발주부서는 주의 촉구  
※ 통보일자 : 2013. 5.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46호

## 민간병원의 요양급여 등 부당청구 의혹

1분과위원회(2013. 4. 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 B는 ○○시 소재 병원장으로 각각 본인들이 영업 중인 병원과 동일한 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재활전문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등 진료기록을 허위로 부풀려 ○○공단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부당청구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A, B는 진료기록을 허위로 부풀려 약 99만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가 확인되어 피신고자들이 위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다른 환자들의 요양급여도 부당 청구한 의혹이 있어 진료비 청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보건복지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47호

##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업체 선정과정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3. 4. 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직무관련자인 피신고자B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후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A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서류를 조작하고 상급자인 피신고자B에게 약 5,8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48호

## 관급공사 원청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4. 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상기기 미관개선공사의 원청업체로 설치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방서와 달리 규격에 미달된 제품을 사용하고 정상규격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발주처에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시방서와 달리 규격에 미달된 제품이 사용된 것이 나타나고, 이로 미루어 나머지 공사에도 규격에 미달된 제품을 사용하는 등 개연성이 있어 공사비 편취에 대한 수사와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공사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계약과 달리 지상기기함 245개소 전체에 0.5mm 두께의 방지판을 사용하여 공사대금 5,666만 원 편취사실 확인, 불구속 기소
- ※ 통보일자 : 2013. 5. 22.
- ○○공사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혀위로 작성한 ○○공사 계약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피신고자B는 피신고자A로부터 시공권을 양도받아 핵심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함으로써 부실공사를 하였으며, 피신고자C는 현장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사가 제대로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가 지급되도록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A는 혀위서류 작성으로 약 4억 9,000여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 피신고자B는 피신고자A로부터 시공권을 양도받아 참여 시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계약 체결하고 핵심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부실시공을 하였고, 피신고자C는 현장 확인 서류를 혀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55호

## ○○청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13. 4. 2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청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자로 재직 당시 업무관련업체인 (주)00 대표이사 피신고자 B 및 (주)00 대표이사 피신고자 C로부터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은 대학동기생이자 업무유관 업체 관계자인 피신고자 B, C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업무상 대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lt;조사기관&gt;

- 조사 중

분과2013-56호

## ○○○ 장병물품 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3. 4. 2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납업체 대표 등으로서 『군복지단마트 위탁물품』 사업에 참여하면서 시중판매가보다 부풀린 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제시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담당공무원들은 업체가 납품한 물품의 물가조사를 하면서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에서 제출받은 군마트 운영 관련자료 등에서 피신고자들의 혐의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업체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조사본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57호

## 군용모자 납품비리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3. 4. 2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납업체 대표들로서 ○○청에 장병용 베레모 등을 납품하면서 국내산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값싼 중국산 제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을 한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베레모 등을 납품하면서 값싼 중국산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약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 혐의가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수사결과에 따라 부정당 업체제재나 환수 등의 조치를 위해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감사원 및 ○○부, ○○시 이첩

### 4. 처리결과

- ○○부, ○○청 이첩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도로건설공사의 토취작업 하도급 업체 대표이고, 피신고자B는 ○○청 업무담당자로, 피신고자B가 도로공사 예정지에 있는 토취장 업체의 부도사실을 통보받고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입찰을 실시하여 피신고자A가 토취장 토석제거비용 공사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여 약 32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편취할 수 있게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관계법령과 지침을 위반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토취장 추가분의 단가를 높게 책정하여 피신고자A가 약 29억 7,752만 원의 공사비를 편취할 수 있도록 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3. 11. 19.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수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60호

## 관급공사 하도급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5.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피신고자B가 도급받은 인테리어공사를 피신고자C에게 하도급 하도록 한 후 피신고자D로부터 2~3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C는 일부 공정을 생략하고서 하도급대금 3억 5,200만 원 중 약 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A는 2~3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는 인테리어공사를 설계변경하면서 산출내역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C은 설계내역과 다른 저가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정을 누락하여 공사를 하고 약 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어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 결과, 실내건축공사 부당 시공액 2억 5,640만 원 회수조치 및 관련자들을 인사규정 및 징계요령 등에 따라 징계처분하도록 소속기관에 조치

※ 통보일자 : 2013. 8. 30.

- 경찰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추진비 등 사업비를 사적 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고, 사전에 특정인을 내정하여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각종 용역 사업을 함에 있어 특정업체를 사전에 내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찰을 방해하는 등 부패행위를 하였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는 업무추진비 등 사업비 약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식대 등으로 횡령한 의혹이 있고, 직원 3명을 사전에 내정하여 채용하고, 각종 용역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를 사전에 내정한 후 일반경쟁 형식을 갖추어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입찰방해를 한 의혹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연구원 원장 외 6명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3. 8. 20
- 부 조사결과, ○○연구원의 계약직 직원 부당채용 관련 기준 제기된 진정민원 처리결과만을 통보하였을 뿐, 우리 위원회 이첩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음  
※ 통보일자 : 2013. 10. 17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수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부는 재조사 요구

분과2013-62호

## 민간업체의 정부용역과제 연구비용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3. 5.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까지 연구 참여자 명단에 등재하여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장비 등을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협력업체로부터 허위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수 억 원 상당의 연구비용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A연구원과 B연구원의 경우 각각 150%씩 참여하였고, 연구원의 참여율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신청한 후에 변경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연구원들을 참여율 변경 없이 추가로 참여시킨 사실이 확인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연구원, ○○진흥원, ○○관리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도로공사 부지내 AM 송신소를 이설하면서 피신고자B와 이면계약을 통해 실제 소요 공사비보다 부풀려 수 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C는 감리업무를 하면서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A, B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총 5억 5,970만 원의 이설비를 부당 편취하고, 피신고자C는 이설비 정산 감리업무를 하면서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확인되어 수사와 재발방지 등을 위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대검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3명 기소  
※ 통보일자 : 2013. 9. 23.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검찰 수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65호

## ○○ 전자전 훈련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3. 5. 9.)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불법하도급이나 구입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 백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지연에 따른 자체 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예산을 손실시켰으며, 사업관련 편의제공을 대가로 향응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전자전 훈련시스템 사업과 초계기 시뮬레이터 구축사업을 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불법하청을 주는 방법으로 사업비 수 백 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편취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등을 위해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0년 ○○도가 시행한 ‘○○대교 건설공사’ 및 2011년 ○○항만청이 시행한 ‘○○만권 준설공사’에 따른 어업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 선박 입·출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 중 일부는 어업보상금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선박 입출항 기록이 없고, 일부는 보상시기에 맞춰서 타 지역에서 주소를 옮겨 어업 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 필요.

**3. 의결결과**

- 해양경찰청 및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해양경찰 수사결과, 42명의 어업보상금 편취 혐의 확인, 검찰 송치 (편취 금액 약 5억 8,088만 원)  
※ 통보일자 : 2013. 12. 22.
- ○○부,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해양경찰 수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73호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부패행위 의혹

2분과위원회(2013. 5. 20.)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시가 2012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유원지의 불법행위를 단속함에 있어, 특정 업소에게 특혜를 주는 등 부패행위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개발제한구역에서 40여개 업소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2012년 위 유원지에서 불법행위를 한 업소를 적발하여 26개 업소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약 2억 9,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면서도, 8개 업소에 대해서는 이를 부과하지 않고 목인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개발제한구역인 ○○유원지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업소 36개 고발, 33개 이행강제금 부과(5억 6,563만 원), 관련자 3명 중징계, 7명 경징계, 관련 부서 주의 및 시정
  - ※ 통보일자 : 2013. 9. 23.
- 경찰 수사결과, 관련 대상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3. 10. 4.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구청 불법광고물 단속공무원으로 '13년 1월 경부터 ○○ 구에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묵인해 주거나 과태료 부과를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수 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면서 광고업체 대표로부터 단속을 묵인해주거나 과태료 부과를 감면해주는 등의 대가로 수 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수수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광고대행업자가 ○○시 ○○구청 광고물정비업무 공무원에게 불법광고물 단속무마와 과태료 감면대가로 1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구청 공무원은 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검찰송치

※ 통보일자 : 2014. 2. 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79호

## ○○ 장성의 예산횡령 및 금품수수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3. 6. 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장성 등으로서 업무추진비 수 백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수주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가 돌려달라는 건설업자에게 이를 되돌려 주었고, 동 사실을 알고 협박하는 같은 피신고자에게는 이를 묵인해 달라며 금품을 교부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동 사실을 묵인해 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부 조사본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본부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담당자 경고조치  
※ 통보일자 : 2013. 8. 23.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시 도로·공원·녹지 등을 조합측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함에도 미징수 하였으며, 특히 ○○구청장은 ○○구역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37억 원 상당의 사용료를 미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손실을 초래하였음.

### 2. 의결이유

- 관련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보아 사용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나, 일부 구청장은 제외하고는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용료를 미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액수가 3,000억 원대에 달하고, ○○구청장의 경우 37억 원의 사용료를 미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감사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사용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관련 판례가 명확하지 않는 등 감사원에서 사용료 등 부과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을 통보
    - 감사원 조사 진행 중 ○○구청은 조합에 사용료 33억 원을 부과하였고, 조합은 전액 납부함
- ※ 통보일자 : 2013. 12. 6.

#### 〈위원회 검토의견〉

- 신고사항을 보완하여 조사기관을 재선정, 이첩할 예정

분과2013-81호

## ○○기지 이전사업 관련 용역업체의 용역비용 편취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3. 6. 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종합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전 직장에서 파견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파견 전 급여 보다 최고 3배 까지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및 간접비 수십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여 국가에 동액 상당의 손실을 야기하였고, 일부 직원들을 특혜 입사시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본 사업 용역비용(직접인건비 및 간접비) 과다지급에 따른 업무상배임 및 특혜 입사 의혹 등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필요.

### 3. 의결결과

- 감사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종결처리  
※ 통보일자 : 2013. 11. 29.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중(2013. 12. 17.)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원가계산에 반영된 인원을 사용하지 않아 인건비 약 7억여 원을 착복하였고, 또한, ○○구청과 맺은 청소대행계약을 위반하여 낙찰률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신고자B 등은 출고된 지 6년이 초과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해 주었으며, 청소대행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A은 인원 미사용에 대한 인건비 약 8억여 원, 낙찰률 이하로 임금지급의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B 등은 피신고자A의 청소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해준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86호

##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3. 6. 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구청 구민운동장 소장으로서, 축구동호회 총무로부터 수납한 운동장 사용료 중 일부 금액을 횡령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는 위 운동장 사용예약 및 청소 담당자로서, 청소용역비 중 일부 금액을 유용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A는 현금으로 수납 받은 사용료 중 일부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고자B는 운동장 배수로 청소용역비의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A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 감독자 3명에 대해 경고처분 요구, 사용료 7건 556,500원에 대하여 변상 요구  
※ 통보일자 : 2013. 8. 22.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B는 피신고자A에게 '재활용산업육성자금' 22억 원을 융자 받는 과정에서 융자 승인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2억 5천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22억 원의 자금이 지원되자 그 대가로 1억 5,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아 불상의 피신고자C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A는 피신고자B에게 융자승인대가로 1억 5,10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2013. 1. 23.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2011. 11. 28. 지불 각서, 참고인의 진술과 피신고자B의 은행거래 내역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A, B에 대한 범죄혐의 없어 내사 종결  
※ 통보일자 : 2013. 11. 20.
- 부 조사결과,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어 종결  
※ 통보일자 : 2013. 11. 2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89호

**하수관거 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3. 6.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시행사로서 수 km의 하수관거를 공사하지 않고도, 당초 계약대로 공사한 것처럼 발주처를 속여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부풀린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공공기관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준공서류의 공사길이가 준공도면의 공사길이 보다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보아 약 14 억 220만 원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 수사와 부실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 통보일자 : 2013. 12. 31.
- 도 감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검찰 수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90호

## 제약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약제비) 편취 의혹 이첩사건 재조사 요구

2분과위원회(2013. 6. 5.)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제약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완제의약품에 대한 원료의 약품을 수입하는 등 직접 제조하지 않았음에도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청에 제출하여 제조허가를 받은 후 ○○공단으로부터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아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우리 위원회는 피신고자의 완제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 산정 관련 ‘사기’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검찰청에 이첩하였으나, 피신고자의 관세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을 뿐 피신고자의 ‘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재조사를 요구함.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재조사 요구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재조사 중

분과2013-91호

## 민간업체의 정부용역 연구과제 연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6. 1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1~2012년 주관연구기관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및 ○○주식회사와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원천기반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아 정산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 출연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이메일' 등에 의하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연구수당을 지급 후 되돌려 받거나 강사료를 부풀린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는 2012년 보조금 5억 1,95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제품구매를 가장하거나 연구수당 및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고, 보조금 약 1억 9,962만 원을 횡령한 점 확인 되어 검찰에 구속 송치
- ※ 통보일자 : 2013. 12. 5.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금속발판을 납품받으면서 견적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입고시켰다가 현장에 설치하지 않은 채 반출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인 피신고자B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단가계약인도지시서, 반입증, 인수검사보고, 반출증 등 전자문서에 의하면, 피신고자B는 제품을 납품한 후 피신고자A의 묵인 하에 다시 제품을 반출한 점이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 있음.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및 업자 배수로 발판 위장 납품과 관련 2013. 7. 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횡령) 공범으로 구속기소, 5,000만 원 금품수수의 점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13. 7. 25.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검찰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95호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의혹**

2분과위원회(2013. 6. 1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차량운전기사나 보조교사(시간제)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약 7,485만원의 기본보육료를 수령한 의혹이 있고, 자신의 남편 등을 교사로 부정 등록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매월 29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5명 자격취소, 보육교직원 3명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명령(7,900만 원), 어린이집 폐쇄처분  
 ※ 통보일자 : 2013. 12. 2.
- 경찰 수사결과, 원장과 교사들이 공모하여 교사를 허위등록한 후 보조금 8,000여만 원을 편취, 어린이집 운영비 6,4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피의자 9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3. 11.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교육청 관내 학교 등에서 방수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축공사 일반시방서에서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우레탄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무허가로 제조된 저가의 우레탄을 사용하여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시공한 일부학교에서 복합방수 공법이 아닌 일반우레탄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고자가 사용한 우레탄 제조업체가 공장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하고 판매한 의혹이 있어 수사나 감사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교육청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3. 11. 13.
- ○○교육청 조사결과, 관련기관으로부터 문의한 결과와 현장 점검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 통보일자 : 2013. 12.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00호

**의료장비 도입관련 납품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3. 7.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 대학교 의사로서, 2008~2012년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금액불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의국비를 은행 대출금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재활의학과 공용 예금통장에 의하면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이 입금된 점, 전공의로부터 의국비로 보이는 금품이 입금된 점이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2013. 12. 12.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에 대해 배임수재로, 의국비 2,600만 원 임의사용의 점은 횡령죄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3. 12. 26.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B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시 여성농업인센터'로 선정되자 어린이집 원장인 피신고자B를 센터 시설장으로 겸직하게 하여 인건비를 부당 지급 받고, 사업비를 허위 정산하는 등 보조금 1억 7,571 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해당 공공기관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인건비 및 보조금 부당사용 의혹과 기본보육료 편취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A의 기본보육료 4,283만 원 부정 수급은 확인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을 속이거나 유착한 의혹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다만, 피신고자A가 부정 수급 받은 기본보육료와 퇴직급여 등 도합 6,599만 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환수 통보 조치  
※ 통보일자 : 2014. 2. 6.
-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04호

## 사회복지단체의 국가지원금 횡령 의혹

2분과위원회(2013. 7. 1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신축자금 약 6천 4백만 원을 횡령하였고, 또한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직원들의 봉급에서 공제를 하였으면서도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직원 인건비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횡령한 의혹과 시설에 입소 한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의 일부를 편취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로서 수산물(김) 가공시설사업의 국고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자부담금 부담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자부담금을 허위로 집행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자부담금 15억 8,350만 원 중 13억 7,000만 원을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한 후 자부담금 통장으로 입금한 후 다시 시공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자부담금으로 위장한 의혹이 있고, 일부 자재의 수량 및 금액을 과다하게 정산하고 차액을 편취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조사 결과, 보조사업 자부담금 허위 집행에 대한 사기죄 및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 송치(기소의견)  
※ 통보일자 : 2013. 11. 25.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수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06호

## 방산장비용 케이블조립체 납품비리 의혹 등

2분과위원회(2013. 7. 1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청 등에 방산장비 등을 납품하면서 장비구성품인 케이블조립체 원가산정을 함에 있어 일반물자를 기준하여 산정해야 함에도 방산물자로 산정하고,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 백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케이블조립체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약 300억 원 상당을 편취 하였다는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수사 결과에 따라 피신고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및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등을 위해 감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구청 공무원으로서 유흥주점에 대한 인·허가 및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허가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고 편의를 봄 대가로 수 백만 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진술, 제출한 증거자료, 관련 기관 제출자료 등을 확인 한 결과, 피신고자가 ○○유흥업소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 되어 수사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09호

## ○○체육회 보조금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3. 7. 29.)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체육회로부터 '12년도 전국체전 참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약 64,000만원 중 4,000만원을 ○○선수 영입계약금으로 받아 놓고, 이를 해당선수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약1,300만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임의제출한 통장거래 내역과 진술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약 1,3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 결과, 범죄협의 입증이 어려워 내사종결 되었으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시에 통보  
※ 조사결과 통보 : 2013. 12. 30.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08호

##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13. 7. 29..)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등은 19개 공공기관의 ○○담당 공직자로서, ○○관련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위 납품거래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는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이 있음.

### 2. 의결이유

- 거래장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등에 대한 혐의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11호

## ○○위원회의 어선피해보상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3. 7. 29..)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B는 ○○지역에 공사 중인 ○○처리장의 폐기물 운반선 운항으로 인한 어선어업 피해보상금을 피신고자C로부터 수령하여 선주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일괄 배분하는 등으로 차액 1억 1,500만 원 정도를 편취함.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C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선주별로 책정된 보상금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위원회에 일괄 지급하였으며, ○○위원회는 일괄 수령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 3. 의결결과

- 해양경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해양경찰 수사결과, ○○위원회 회장에 대해 16척의 어민들에게 돌아갈 보상금 7,9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3. 12. 6.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해양경찰 수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은 ○○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는 전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의 퇴직급여적립금과 국민연금 보험료,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보험료 환급금 등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A는 보육교사가 아닌 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일자 및 보육아동 수를 허위로 등록하여 89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고,
- 피신고자B는 국민연금 보험료 138만 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매월 10만 원의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발생된 환급금 약 48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을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피신고자 B 국민연금보험료 등 1,176만 원 상당 횡령)  
※ 통보일자 : 2013. 11. 22.
- 부 조사결과, 보육교사 허위 배치 및 허위 임면보고, 아동 허위 등록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1,026만 원), 어린이집 운영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조치      ※ 통보일자 : 2013. 10.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16호

## ○○ 사업단 인건비 편취의혹

1분과위원회(2013. 8. 1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하구둑관리소 기전시설 작업과정에서 실제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의 노임을 허위 청구하여 편취하고, 피신고자 B에게 상납하는 등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 B 하구둑 기전작업시 지인 10명의 명의와 통장을 빌려 허위의 노임을 청구하여 현금 인출 후 임의 사용하고, 작업일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 부당한 집행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공사 이첩

## 4. 처리결과

## &lt;조사기관&gt;

- 조사 중

분과2013-115호

## 벼 대체작목 육성지원사업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8. 1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마을주민들의 이름을 차용하여 형식적으로 작목반을 구성한 후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는 피신고자A의 택지분양용 임야 주변 사유지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개설하여 피신고자A가 택지개발 및 분양을 잘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A는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고추 무농약 생산단지조성사업비 268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피신고자B는 농지도 없는 가파른 산 위쪽 임야에 도로개설계획을 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19호

## ○○택지개발사업관련 공사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3. 8. 1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2년경 ○○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택지개발사업의 파일 시공사진 및 항타기록부를 조작하여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받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항타기록부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고, 파일시공사진의 속성을 확인한 결과 사진이 수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2013. 11. 21. 공사비 6,213만 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  
※ 통보일자 : 2013. 11. 21.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B는 공설시장 노점 사용료 940만 원 상당을 군에 세입 조치하지 않고, 시장 사용권 명의를 변경해 주는 대가로 점포 1칸 당 3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2,072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A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5년간의 노점상 사용료 940만 원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시장번영회 운영 경비로 사용한 사실과 피신고자A는 사용권의 양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용권 취소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이를 묵인한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내사 종결  
※ 통보일자 : 2014. 1. 9.
-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24호

**한방건강센터 임차인 선정관련 뇌물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13. 8.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1년 한방건강센터 운영권선정 관련 공무원 알선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약정된 임대보증금 5억 7,000만 원의 예치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이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1,000만 원 금품수수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죄로 검찰에 구속송치, 임차인은 뇌물공여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담당 공무원은 배임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 통보일자 : 2013. 11. 15.
-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수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에서 2013. 5월 시행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바지락 종폐 살포)’ 입찰의 낙찰자로서 납품조건에 명시된 ‘맨손어업’ 대신 ‘배(채취선)’를 이용하여 채취한 저렴한 바지락을 ○○군에 납품하고 3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신고된 생산지 어장에서 자연상태에서 생산된 건강한 바지락 종폐를 맨손으로 잡아 납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위반, 중국산을 납품하거나 맨손으로 잡지 않은 저렴한 바지락을 납품하고 차액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어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사업계획서상 조건에 맞지도 않은 바지락 종폐를 납품하는 등 기망행위 적발, 1억 4,592만원 상당 편취,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3. 12. 9.
-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29호

## 4대강사업 공기연장 특혜와 지체상금 미부과에 따른 국가예산 손실의혹 등

2분과위원회(2013. 8. 2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B는 00공사 00사업단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하구둑 구조 개선사업 공사와 관련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시공사들에 공기연장 특혜를 주고,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있고,
- 피신고자A는 시공사측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가 시공사의 하자공사를 수주토록 편의를 봄으로, 그 업체가 하자를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공사대금 수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시공사측에 합리적 공기연장 사유가 없음에도 공사기간을 294일이나 부당하게 연장 승인하여 주고, 약200억원대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미부과하여 막대한 국가예산을 손실케 한 개연성
- 하자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하자복구에 실패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감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감사원 및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상기기 미관개선공사에 대한 관련 설치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방서와 달리 규격에 미달된 제품을 사용하고, 또한 공사의 일부분을 미시공하는 방법으로 ‘관련 공사비용’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일부 공사에서는 정상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일부공사의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도 당초 설계서상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등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한 사실여부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공사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31호

## ○○ 직원들의 물품 및 인건비 횡령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3. 8. 2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위 피신고자들은 ○○본부의 각종 장비 및 자재들을 무단 반출하여 횡령 하였고, 위 피신고자들과 함께 일하는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타 하도급업체의 작업장에서 일하도록 한 후 이들의 인건비 일부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관리대장 없이 자재를 보관하면서 부품 일부를 인근 납품업체로 무단반출한 의혹이 있고,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타 하도급업체의 작업장에서 일하도록 한 후 이들의 인건비 일부를 횡령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32호

##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납품비리 의혹 등

2분과위원회(2013. 8. 2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전국의 사업용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주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성능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을 장착하여야 함에도 값싼 유사 품을 장착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수 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은 차량용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주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성능검사를 받은 정품을 장착하여야 함에도 유사제품을 장착 해주고 약 4억 원 상당의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36호

## ○○댐 건설 관련 양식장 이전보상금 허위 청구 등

2분과위원회(2013. 8. 2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댐 건설공사로 인하여 양식장을 이전하면서 기본계획고시 이후에 어류를 반입시키거나 보상대상 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 상당의 이전보상금을 허위청구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양식장 이전보상비를 청구하면서 어류를 불법으로 반입시켜 수량을 부풀려 보상평가를 받는 수법으로 보상금 수 백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공사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37호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군인의 사무용품 대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8. 30.)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 B, C 등 ○○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들은 각 소속 기관에서 사용할 사무용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하여 피신고자D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피신고자D는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약18%를 세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물품대금을 되돌려 주는 수법으로 공공기관의 사무용품 대금을 편취하였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들이 피신고자D와 공모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약 3,6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어 공공기관 예산편취 부분에 대한 수사와 물품구입 업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부,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조사 결과, 피신고자D 별금 500만 원 가납명령 청구, ○○시 회계담당 공무원 7명 별금 합계 1,400만 원 가납명령 청구  
※ 통보일자 : 2014. 2. 5.
- 부 조사 결과, 중위 ○○○외 1명 각 감봉 2월, 근신 7일 처분하였고, 전역자 2명을 같은 사유로 검찰 통보  
※ 통보일자 : 2014. 2. 5.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38호

## 지자체 민간위탁기관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9. 9.)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7. 1. '○○시 ○○센터'에 입사하면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규정보다 높은 호봉을 산정 받아 ○○시에서 100% 보조하는 인건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수 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인사기록카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약 3,098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지도하며 현장실습을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하게 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B,C는 의용소방대 급식비로 지원된 1,24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대원 68명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교육비 714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D 등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묵인하여 유착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A의 산불캠페인 경비 마련 자필계획서, 前 부회장과 사무보조원 등 참고인 진술,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보조금 횡령 의혹과 의용소방대원 17명의 진술 등 대리 서명과 교육 참석자 명단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등 10명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동행사, 혀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사기 등 혐의 인정되어 검찰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3. 12. 23.
- ○○도,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40호

## 사립대학교 국고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9. 9.)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 B, C, D 등은 '재학생 충원률과 취업률'을 허위 조작하여 국고보조금 2억 5,6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고 ○○부로부터 「2010년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국보조금 10억 5,400만 원의 일부를 부당 사용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이 허위 조작되어 국고보조금 2억 5,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학생들의 4대 보험 및 건강 보험료 대납 내역, 취업지원 활동비 지급 기안문 등을 통해 보조금 횡령 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자금 2억 5,620만 원 편취 확인(피신고자B 별금 100만 원 가납명령 청구, 피신고자D등 4명 별금 50만 원 가납명령 청구)
- ※ 통보일자 : 2014. 2. 6.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증명서'와 국가유공자의 '국가 유공자증명서' 등 26건을 위조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 등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묵인하여 유착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A는 ○○시 조사 결과 화장장 사용료 2,600만 원을 횡령하여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사실 인정하고, 5건의 국가유공자 증명서, 21건의 수급자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 확인되어 ○○시 영생관리사업소 세외 수입 전반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A가 52회에 걸쳐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5,185만 원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14. 1. 2.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42호

**영화제 보조금 편취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3. 9.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 B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영화제조직위 회계담당 등 관계자로서 ○○지방의원을 국외출장에 임의로 포함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C는 지방자치단체 감독공무원으로 이를 알고 도 둑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A, B는 해외영화 작품섭외 등을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추진하면서 지방의원들을 임의로 포함하여 1,034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 지출하고, 자부담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출한 혐의가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이 보조금을 부당 지출한 혐의가 인정되어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2,117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감독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훈계조치

※ 통보일자 : 2013. 12.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관급공사 계약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고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규격서에 명시된대로 하지 않고 일부 과정을 생략하고 시공함으로써 해당 기관에 대해 5,883만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동 물품의 규격서에는 ○○과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설치시에는 이를 생략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44호

**전원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9.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민간주도로 추진하면서 허위로 입주자들을 모집한 후 사업을 승인받고 10억 원 상당의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A는 입주예정자를 허위로 모집하여 ○○시가 10억 원 상당의 예산을 기반시설에 투자하게 하였고, 지가가 상승된 사업 부지를 고가에 매각하여 2억 5,21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 결과, 입주 예정자들을 허위로 모집한 후 ○○시로부터 기반 시설비 1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13. 12. 17
- ○○도 :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수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터미널 등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관련 주식이 상속 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390억 원 상당의 상속제세 포탈을 도와준 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진행된 사전상속과 관련하여도 회신 내용과는 달리 과소하게 추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관계회사 주식의 신고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47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부패행위 의혹

2분과위원회(2013. 9. 10.)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관련 사업계획 승인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양도가 불가능함에도 구유지를 무상 양도함으로써 8억 원 상당의 구청 수입 감소를 초래함.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은 당초보다 더 많은 409m<sup>2</sup>를 부당하게 무상양도 대상으로 확정하여 14억 원 상당의 구청수입에 손실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로 지정된 공유지에 대하여도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 3. 의결결과

- 감사원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공공시설의 사업주체에 대한 무상양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나, 동 과정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유지를 무상양도 결정한 데 대하여는 주의 요구  
※ 통보일자 : 2014. 1.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 직장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사장과 협의하여 실업급여 신청서 상의 실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로 변경하여 2012. 12월부터 2013. 3월까지 실업급여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전 근무지 회사는 폐업 또는 소멸,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만큼 경영상 긴박한 상황이 보이지 않음에도 2013. 4. 월까지 실업급여를 편취한 의혹이 있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개인사정에 의하여 2012. 12. 6. 까지 근무한 후 이직하였으나 총 396만 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확인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액(부정수급액의 100%)을 포함, 총 791만 원 반환명령(2013. 10. 24.)

※ 통보일자 : 2013. 11. 1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49호

## 관급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의혹

2분과위(2013. 9. 10.)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단에서 발주한 노반건설공사의 터널공사를 하면서 설계와 달리 비용이 적은 공법으로 굴착하고도 설계대로 공사한 것처럼 발주처에 보고하고, 강관그라우팅 일부 수량을 미시공하는 방법으로 수 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받는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약 4억 3,670만 원의 굴착공사비를 부당 수령하고, 강관 그라우팅 50공을 미시공하고도 약 5,100만 원의 공사비를 부당지급 받는 혐의가 확인이 되고, 터널 방수시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3억 4,700만 원의 공사비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사기혐의 등에 수사와 공사비 감액 조치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 &lt;조사기관&gt;

- 조사 중

분과2013-157호

## 민간어린이집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3. 9. 2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2012. 1.부터 2013. 7.까지 관할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육료'를 보육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아 유용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예금통장 2개를 이용하여 보육교사의 급여를 구청에 제출하는 서류보다 모자라게 덜 입금시킨 점이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구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58호

## 직무관련 정보이용 이익도모 등 부패행위 의혹

1분과위원회(2013. 9. 2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지자체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으로 자기 소유지와 시소유지를 교환한 이익도모행위로, 피신고자B는 피신고자A의 청탁으로 감정가를 임의로 조작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A는 자기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여 1천 5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고자B는 해당공무원과 유착 및 부정한 청탁 등 부당편취를 도와준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감사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2. 경 군납유 입찰담합에 따른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자문교수를 임의로 선정하고 약 1억 원의 고액 자문료를 지급하여 공공기관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송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소송 계약절차 등을 위반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회계감사 등이 필요함.

### 3. 의결결과

- 감사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이 A교수를 자문교수로 선임한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없고, 자문료 1억 원을 지급한 기준도 다른 교수들의 자문료와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이를 처벌하기 곤란하여 구두경고 조치  
※ 통보일자 : 2013. 11. 22.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60호

## 사회복지단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3. 10. 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생계급여 산정 시 일시보호소에 입소해 있는 현원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정원 기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고, 피신고자B는 생계급여 사용 후 차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생계급여를 매월 보호 중인 인원 기준으로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정원 기준으로 지급하여 1억 2,978만 원을 과다지급 하였고, 일시보호소는 과다 지급받은 생계급여를 정해진 용도 외로 지출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전) ○○아동일시보호소장 외 6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생계급여 집행잔액 1억 2,978만 원 미반납)로 불구속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전)○○도 아동청소년과장 외 2명을 업무상배임(생계급여 집행잔액 1억 2,978만 원 반환임무 위배)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3. 11. 18.
-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내용 보다 단가가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하고, 도급업체 대표 피신고자B, 감리업체 대표 피신고자C 등은 이를 묵인한 의혹 등이 있음.

### 2. 의결이유

- 검측조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에 대한 혐의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A 등을 행정조치(과다지급 공사비) 약 900만 원 상당을 설계변경 시 감액)하고, 피신고자B, C 등을 신분상 조치(주의)함  
※ 통보일자 : 2013. 12. 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62호

## 청소업차량 용역업체 인건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10. 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용역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허위 종사원을 등재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피신고자B는 인건비 청구시마다 작업일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예산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작업일지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등에 대한 혐의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0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냉동기 등을 중고 제품으로 설치하고서도 신품으로 설치한 것처럼 ○○군에 사업정산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4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0. 10월 제조되어 설치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냉동기는 실제로는 2004. 6월에 제조된 중고 냉동기로서 신품으로 조작·설치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66호

## 장애인복지단체 지회장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0. 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 사망한 직원(2013. 5. 28. 사망)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보조금 부정수급하고,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변조·행사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사망한 직원의 급여 예금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고, ○○경찰서장 명의 범죄경력조회 회보를 변조하여 장애인복지단체에 제출한 점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보조금 4,837,000원을 부정수급한 점이 확인되고,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변조하여 같은 복지회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

※ 통보일자 : 2013. 11. 15.

- ○○부,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산소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로 ○○산소를 퇴사한 직후 바로 ○○가스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취업이 안 되었다고 거짓으로 고용노동센터에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산소를 퇴사한 직후 바로 ○○가스에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취업이 안 되었다고 거짓으로 고용노동센터에 신고하여 총 10회에 걸쳐 1,128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편취한 의혹이 상당하여 조사의 필요성 있음.

### 3. 의결결과

-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보조금 484만 원을 부정수급한 점이 확인되고,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변조하여 같은 복지회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  
※ 통보일자 : 2013. 11. 15.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68호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0. 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 B는 ○○시 소재 아파트 시설물 공사를 시공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피신고자C와 공모하여 자작나무 등 식재공사 등의 일부수량을 미시공하고도 전부 시공한 것처럼 ○○시에 혀위 정산보고 하여 수천만 원의 지원비를 부당지급 받는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나무 등을 미식재하거나 일부공사 등을 미시공 했음에도 전부 공사한 것처럼 ○○시에 혀위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부당 청구한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공사의 터널을 시공하면서 강섬유를 설계와 달리 일부수량만 배합·시공하는 방법으로 수 억 원의 공사비를 부당 지급 받는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강섬유 일부수량을 미시공하는 방법으로 총 12 억 5,1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당지급 받는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부실공사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시방규정에 미달되게 시공한 공사비 2억 5,800만 원 회수, 시공업체 등에 대한 벌점 부과 조치, 다만 여울 발생으로 인해 콘크리트 시공량이 증가함에 따라 강섬유의 실제 시공 수량은 설계수량 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함  
※ 통보일자 : 2013. 12. 16.
- 경찰 수사결과, 강섬유의 전체 시공수량이 설계수량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비 부당편취 행위에 대해 내사종결 처리  
※ 통보일자 : 2013. 12.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73호

## 공직유관단체의 소송지원금 부당 집행 의혹

1분과위원회(2013. 10. 21.)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신고자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규정을 위반하여 동 소송 대리인 선임에 착수금 2,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소송비용을 공적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내부규정(법률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비 관련 지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부 이첨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본인과 배우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일상감사 결재를 한 것이 확인되어 피신고자에 대해 내부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 다만, 소송지원금 부당 집행 여부는 소송에서 임직원의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통보일자 : 2013. 12. 12.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세무사이고, 피신고자B는 세무공무원들로서, 서로 공모하여 '11년 4월 경 피신고자A의 세무사사무소에서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정미소 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별건으로 구속된 신고자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피신고자들이 정미소업자로부터 뇌물수수를 암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영치금 4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아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75호

## 민간위탁기관의 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10. 21.)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특히 및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을 정부에서 위탁받아 특히 관련 보조금은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건비 전액을 보조받으면서 타 업무를 겸직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특허지원창출사업 보조금 23억 4천만 원과 일자리창출사업명목보조금 17억 원 등 약 40억 4천만 원을 보조받아 정산하지 아니하고 일부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조사결과, 피신고자 해임 및 국고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고발과 환수조치 예정(환수금액 약 4억 1,242만 원), 경고 및 운영기관 교체  
※ 통보일자 : 2014. 1. 24.
- 경찰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76호

## 영농조합법인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10. 21.)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9년 경 보조금을 받아 '발효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배합기 등의 가격을 시중가격보다 부풀려 제출하고 2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는 사료배합기의 가격과 농산부산물 제조 건물의 규모에 변동이 없음에도 건축비가 당초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는 등 피신고자가 견적가격을 부풀려 제시하고 2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79호

##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0. 21.)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와, 창고시설을 공장시설인 것처럼 보조금지급요건을 속이고, 보조금 4억 4,342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보조금 횡령과 편취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수사가 필요하고, 감독기관의 보조금 관리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공무원 2명, 회사대표 1명) 3명의 보조금 횡령 관련 사실이 확인되어 약식기소 및 보조금 환수  
 ※ 통보일자 : 2013. 11. 26.
- ○○청 조사결과, 부당 지급받은 보조금 약 4억 4,500만 원(이자 포함) 환수  
 ※ 통보일자 : 2013. 12. 4.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도로부터 비수익노선 운행촉진 등을 위한 “시외버스 재정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년 수 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비수익노선으로 인정받은 노선을 일부구간만 운행하는 등으로 재정지원 조건을 위반하며 불법 운행하고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업체는 2012년도의 경우, 재정지원금을 지원받는 7개 비수익노선 중 3개 노선을 임의로 단축 운행하여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7개 비수익노선 운행을 신청하여 재정지원금을 지급받고 도 이중 4개 노선에서 미운행 또는 단축운행이 확인되어 업체대표 등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3. 12. 16.
- ○○부는 감독권한이 없다며 조사 미실시(○○도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2억 6,600만원을 회수)  
※ 통보일자 : 2013. 12.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83호

## 공직유관단체 이사장의 시설물 불법대관 관련 금품수수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0. 2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연구원 내 ○○센터를 특정 예식장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예식장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대관해주면서 해당 사업자로부터 1억 4,100만 원을 받았고, 피신고자B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연구원은 특정 업체에게 결혼 영업목적 대관을 하면서 대관료 약 5억 5,800만 원을 받은 의혹 등이 확인되고, 연구원 시설물 불법 대관 관련 금품수수 등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연구원 관리·감독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84호

##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13. 11. 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해외 투자자와의 투자협의 등을 위한 국외 출장 중 투자협의 대상자가 대주주로 있는 호텔에 숙박하면서 투자협의 대상자로부터 숙박비를 대납 또는 할인 받는 방법으로 부당 제공받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텔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행사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방법 등으로 회의장 임차료 약 591만 원(5,200달러)을 숙박비 용도로 임의 사용한 의혹에 대해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감사원 및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기관에 대한 행정상 주의 조치, 훈계 1명, 약 256만 원 회수  
※ 통보일자 : 2012. 12. 23.
- 감사원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85호

## 시니어 창업교육과정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3. 11. 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지원금으로 경력을 활용한 비즈니스 코치 창업분야 등의 창업교육을 하면서 다른 과정에 참여했던 인원을 위 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 수 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교육생들의 출석부 등을 허위 작성하여 정부지원금 약 2,000여 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86호

## 민간업체 국고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2013. 11. 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9,115만 원을 지원받아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여 인건비 2,0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지원받은 사실을 숨긴 채 ○○시에서 보조금 3,000만 원을 중복 지원 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는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A가 과제명만 다르게 신청하여 ○○시 보조금 3,000만 원을 중복 지원 받아 편취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피신고자B의 유착 의혹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 및 감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청,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87호

## 관급공사 감리의 공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11. 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중학교 전기공사」 하수급인으로부터 골프 라운딩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수수하고,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여 금액불상의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골프라운딩 비용으로 교부한 200만 원에 대해 하수급인으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 곧바로 계좌입금 시킨 점, 발주기관에 제출한 출근 일수가 현장 비치 작업일수에 비해 부풀려진 점으로 보아 수사 및 감사의 필요가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시 교육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의 민간위탁기관을 운영하며 본인이 비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상근직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자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허위 청구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상근직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총 4,228만 원을 지급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인건비를 지급받은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비상근 근무 및 근무하지 않고 지급받은 인건비 2,280만 원 환수(완료), 규정과 달리 이용료 부담금을 임대료로 사용한 사실 적발(700만 원)

※ 통보일자 : 2013. 1. 2.

- 경찰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90호

## 민간병원의 의료비 부당청구 의혹 등

2분과위원회(2013. 11. 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기관은 개원부터 현재까지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단에 의료비를 부당 청구하였으며, 노숙자를 알선하여 입원시키고, 또한 허가받지 않은 병상을 사용하여 의료비를 부당 청구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단에 의료비를 부당 청구한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와 감사의 필요성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196호

## 공직유관단체장의 횡령 및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 의혹 이첩사건 재조사 요구

2분과위원회(2013. 11. 1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외 ○○연구원 임직원들은 2010년~2012년 동안 지경부 등으로부터 보조금 약 66억 원을 교부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고, 사전 내정에 의한 직원 채용, 용역사업 발주 등 부패행위를 하였음.

### 2. 의결이유

- 부는 ○○연구원의 계약직 직원 부당채용 관련 기준 제기된 진정민원 처리결과만을 통보하였을 뿐, 우리 위원회 이첩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적정 집행 보조금 환수, 각종 용역사업 발주 등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있어 재조사 요구.

### 3. 의결결과

- 부 재조사 요구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분과2013-205호

## ○○개발센터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1.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부, ○○도 등으로부터 각종 취약계층 관련 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취약계층 교육 목적의 국고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 등이 있어 수사 및 조사의 필요성이 상당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00관광이 00항공의 직영사로 안정적인 항공좌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교장 자격 선진국 교육체험 연수사업(독일-체코)”을 약 23억원에 낙찰받았으나,
- 인천-프라하 구간의 항공요금이 G클래스(단체할인적용) 요금보다 비싼 H클래스 요금으로 공급되자, 피신고자B에게 로비하여 인천-프라하 구간의 항공노선을 삭제하고 G클래스 요금의 인천-프랑크푸르트 구간의 항공일정으로 변경하여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해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A는 인천-프라하 구간의 항공요금이 당초 계획보다 비싼 H클래스 요금으로 공급되자, 연수 구간을 사전답사차 동행하면서 자신의 친동생과 친구인 피신고자B에게 로비하여 인천-프라하 구간 항공노선을 운행하지 않는 일정으로 변경받고,
- 피신고자B는 객관적 사실 확인없이 자신의 상관인 종합교육연수원장 등에게 피신고자A와 같이 허위 사실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주요 항공일정을 변경 주도한 결과 국가예산의 손실 및 금품 수수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감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 교육부 및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200호

## 마을기업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11.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추진하지 않고, 혀위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1차년도 5,000만 원, 2차년도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았으며, 위 사업비로 구입한 차량 및 임대한 사무실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예산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실적보고서 등 공공기관의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에 대한 혐의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201호

## 군용 탄피 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3. 11.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방산업체 대표로서 ○○청에 40mm유탄용 탄피와 105mm전차포탄용 탄피를 납품하면서 탄피원가를 부풀리기 위해 작업일지 등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탄피 납품원가를 부풀려 약 2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기에 수사와 함께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202호

## 새농어촌건설운동 보조금 등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11.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마을에 지급된 약 9억 원의 보조금으로 토지 등을 취득한 후 마을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피신고자가 대표자인 별도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는 마을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피신고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등으로 5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축물을 편취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lt;조사기관&gt;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를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컨테이너에 선적한 박스 총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사로부터 수출지원금 명목의 보조금 수 억 원을 과다 지급받는 등 예산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수출서류 등 공공기관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에 대한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 및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207호

## 농민의 영농규모화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3. 11.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5년 2월부터 2007년 6월경까지 ○○도 ○○시 소재 농지를 ○○공사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을 지원받아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매매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액수 미상의 농지관리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는 2007년 3회에 걸쳐 6필지의 농지를 비교적 지가가 낮은 지역에서 사들이면서 거래상대방과 짜고 ○○공사와의 계약서에는 매매가격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금 1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가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공소시효 완성 및 입증 근거자료 부족으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  
※ 통보일자 : 2014. 1. 24.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전체지원 농지(63필지)에 대한 계약 해지로 채권 잔액 9억 300만 원 회수 및 위약금 5,364만 원 부과  
※ 통보일자 : 2014. 2. 11.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212호

## 축전지 납품 비리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3. 12. 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축전지를 납품하면서 음극판, 솔레노이드밸브 등의 원가를 부풀리고, 작업설물 등을 빼돌리거나 소요량을 과다청구 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축전지용 재료비와 작업설물을 빼돌려 약 70여억 원을 편취·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213호

## 민간업체의 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12. 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운전자의 월급여를 14일 만근기준으로 지급함에도 2011년 ~ 2012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15일 만근기준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2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서」에 근로일수 조작, 비정규직이 운전하는 노선의 운송원가에 정규직 임금을 반영하여 운송원가 편법 인상 등의 방법으로 3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을 수령하여 편취한 의혹 등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억 4,9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이 있고, 버스업체들은 피신고자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한 후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운송원가 감소요인을 반영하지 않거나, 운송수입금을 축소함으로써 원가 대비 결손액을 과다하게 산출한 의혹이 있고, 버스업체들은 임금조견표나 복리후생비를 조작하여 운송원가를 과다하게 산출한 의혹이 있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215호

## 마을 이장의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3. 12. 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마을 농로포장공사 보조금을 지원받아 부실시공 하여 공사비를 적게 투입하고, 자재대금 및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액불상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피신고자B는 준공검사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A는 농로포장공사 보조금 2억 9,928만원을 지원받아 부실시공 하여 공사비를 적게 투입하고, 자재대금 및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 후 되돌려 받은 점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 출연 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여 혀 위로 용역을 발주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용역 발주금액을 부풀리거나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출연금 수 입액 원 이상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혀위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비와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 및 감사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감사원 각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219호

## R&D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2. 5.)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시켜 인건비 지급 후 되돌려 받거나, 연구 과제와 무관한 기존 제품 생산에 사업비를 사용하고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출연금 수 억 원을 편취함.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과 부적정하게 집행된 정부 출연금 환수 및 관련자 정부 출연사업 참여 제한조치 등 필요성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각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220호

##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정비 보조금 횡령 의혹 등

2분과위원회(2013. 12.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노후 공동 주택주거환경 개선자금 명목으로 보조금 3,000만 원과 자부담금으로 아파트 단지 오·폐수 공사 등을 하면서 공사내역을 속이는 방법으로 공사비 1,7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아파트 관리비로 임의 사용하여 공공기관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아파트 공사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7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위해 감사가 필요 함.

### 3. 의결결과

-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221호

## 요양병원의 지원금 부정 수급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2.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아닌 알콜중독 환자를 지원금을 받기 위해 다른 질환자로 조작하고, 요양병원 등급을 잘 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 등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입원이 필요 없는 알콜중독 환자를 다른 질환자로 조작하고,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 등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의료비를 부당 청구한 의혹이 상당하므로 수사와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생산시설 증설 지원사업”과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업체에서 새로 설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균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정산 증빙으로 첨부된 세금계산서 등이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고, 전체 보조금 지급액 중 위조 청구로 인한 차액 2 억 1,697만 원에 대한 보조금 1억 111만 원의 환수가 필요하여 수사 및 감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223호

## ○○회 국고보조금 횡령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2. 5.)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물품 단가와 수량 등을 부풀려 허위 정산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수법으로 수 천만 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묵인한 의혹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A가 허위 견적서를 발행받아 부풀린 차액만큼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 횡령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피신고자B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내용이 확인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청 이첩

## 4. 처리결과

## &lt;조사기관&gt;

- 조사 중

분과2013-225호

## ○○박람회 버스 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3. 12. 2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박람회 기간 내 시내버스 무료운행 방안'을 합의하고, 시내 버스 무료운행을 추진하였지만, 피신고자B는 합의서 내용과 달리 일부 노선을 결행하였음에도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고, 피신고자A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일부노선에서 시내버스의 결행사실이 확인되고, BIS시스템 분석결과 결행이 확인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BIS자료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삭제한 것은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226호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당집행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31. 12. 2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군수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적극 도와준 피신고자에게 신축 중인 사립 유치원 건축비 3억 원을 특혜 지원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용도 외로 집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군수의 미인가 시설에 대한 건축비 지원 관련 특혜 의혹과, 피신고자 의 보조금 횡령 등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어린이집 보조금 1,644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불구속)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4. 2. 3.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공단으로부터 연구개발 지원사업 주관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원받은 목적대로 연구개발은 하지 않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는 등으로 피신고자B 등과 짜고 각종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지원받은 목적과 무관한 것을 구입하고 그 증빙을 연구개발 과제의 증빙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지원금 등을 편취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229호

## 해상면세유 부정유통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2. 2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외항선 입항시 남은 연료 또는 미주유한 해상면세유를 수집하여 전국에 있는 딜러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해상면세유를 부정하게 유통시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관세를 환급받는 해상면세유를 외항선에 급유하지 않고 이를 전국의 딜러에게 부정하게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고 결과적으로 관세 등을 정유사가 부정하게 환급받게 하여 국가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청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 중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분과2012-17호

**무용학과 교수 공연료 등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2. 2. 2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도 등으로부터 공연 보조금 등을 받고 학생들을 공연에 출연시키고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고, 정규 수업에 시간 강사와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실기수업을 대신 시키고, 학생들에게 파트비 명분으로 돈을 걷어 매월 간식, 물품, 명절 연휴비 등으로 제 공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시 공공시설사업소로부터 지급받은 공연료 3,000만 원 중 공연에 출연한 무용단원 출연료 약 56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이 확인되는 등 수사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공연료 1,87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3. 9. 7.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A,C등 주의(겸직금지 위반)  
 피신고자B 경고(부적정 수업진행) 조치  
 ※ 통보일자 : 2014. 1.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되어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어민들로부터 어업권 양도·양수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회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지역 어민들은 외래어종 수매와 치어를 납품하면서 물량을 속이거나 다른 어민들 명의로 수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는 어업권 허가 등과 관련하여 어민들로부터 약 2,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어민들은 외래어종 매입 등 어업 보상금을 허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환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담당공무원이 어민 5명으로부터 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어민 5명은 뇌물공여죄로 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하고 불법수매에 대하여는 해당 군청에 통지하여 환수조치(3,639만 원)할 수 있도록 통지  
※ 통보일자 : 2014. 1. 6.
- ○○도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2-35호

## 국책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2분과위원회(2012. 3. 19.)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약 33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4개 연구개발과제 사업을 하면서 자신 소유 (주)○○에서 자체 추진한 LED사인보드 사업과 대전방지 용 기술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정산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상당의 정부지원 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자사 개발사업에 사용하고도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정산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등 2명 약 10억 1,949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통보일자 : 2014. 1. 21.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515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 되어 환수조치(환수 진행 중)  
※ 통보일자 : 2012. 12. 3.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하지 않고 정화조 폐쇄비용을 부당 청구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는 동 현장 책임감리원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부당청구를 도와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A는 기존 정화조 폐쇄 공사비 1,776만 원을 부당청구 하였고, 피신고자B는 동 공사현장 책임감리 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공사 부실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을 위해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부실시공으로 확인된 정화조 1,605개에 대해 재시공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건설업자와 감리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담당공무원은 징계조치  
※ 통보일자 : 2013. 2.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2-75호

**산사태 공사비용 부당청구 의혹**

1분과위원회(2012. 7.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중앙회’는 ‘산사태 복구공사’의 설계·시공자로 산사태 복구 공사를 수행하면서 잘못된 사방공사 방식을 채택하고, 운반비와 복구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리고, 임목을 불법으로 벌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설계에 반영된 사토를 현장 내에서 처리하여 약 4 억 7,436만 원을 과다하게 설계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사 전반의 과다산정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 및 ○○청, ○○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설계변경 과정에서 단가를 산정하면서 ‘건설 공사 표준품셈’을 잘못 적용하고, 수량 산출 잘못으로 공사비 14억 1,800 만 원 과다지급 확인
  - 행·재정상 조치 : 시정·환수 12건 (14억 1,800만 원 환수 진행 중)
  - 신분상 조치 : 관련 공무원 문책 16명 (훈계 16명)
- ※ 통보일자 : 2013. 6.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대학교수인 피신고자들은 2009. 6. ~ 2010. 1. 까지 대학에서 연구 사업에 참여했던 한시계약직 강사가 평정심사 결과 임용부적합자로 판정되었으나, 적합한 것으로 조작하여 정규교원으로 채용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교수채용과정에서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금품수수 여부 등의 수사와 함께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등을 위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리  
※ 통보일자 : 2013. 4. 17.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위법사항이나 규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 통보일자 : 2013. 12. 30.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2-111호

## ○○학교장 뇌물수수 및 공용물 편취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2. 9. 2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교장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사 및 납품계약과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계약직 조리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으며, 수 년 동안 영양사와 조리원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강요로 학생들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와 음식물을 편취하였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교장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영양사와 조리원들에게 지속적인 강요와 부당한 지시로 천 만 원 상당의 급식재료와 음식물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 되었고, 각종 공사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 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시 교육청 이첩

##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13. 11. 8.
- ○○시 교육청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조리사로부터 2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학교 공사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2,445,130원 환수, 피신고자 경고 조치      ※ 통보일자 : 2013. 1. 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2-113호

##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2. 9. 2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보육교사들의 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면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보다 과소지급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육료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행하고서 피신고자가 수령한 의혹이 있고, 아동이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802,000원)청구한 의혹이 있어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부 및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 결과,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경우 해당반의 기본보육료를 포함하여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검토 요구에 대하여는 2010년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 유지 필요  
※ 통보일자 : 2013. 9. 25.
- 시 조사 결과, 아동 전○○은 2011. 8. 7.부터 2011. 10. 6.까지 61 일간 국외에 체류하였음에도 보육료 80만 2,000원을 부당 청구하여 2012. 10. 24. 보조금 반납 결의(환수 완료)  
※ 통보일자 : 2012. 11. 21.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2-126호

##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 유치사업 관련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2. 10. 15.)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횡령하고, 감독공무원은 조성공사 시행권 및 분양대행권을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약 20억 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횡령과 배임을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공하며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지자체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횡령 및 배임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조사결과, ○○시의 시장, 부시장, 투자지원실장은 업무상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 투자유치팀장은 2억 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투자알선 회사 대표이사는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 통보일자 : 2013. 4. 1.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검찰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들의 실 근무 일수와 시간을 부풀려 과다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동의 없이 일정액을 법인의 후원금으로 자동이체 시키는 수법으로 국가예산 낭비 와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근무상황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참여자들에게 허위기재토록 지시하여 관리자 서명을 한 후, 국고보조금 약 322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함

**3. 의결결과**

- ○○부 및 ○○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4명이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부풀려 총 316만 6,640원을 과다지급 받은 사실 확인(환수완료), ○○노인복지센터 주의, 담당 공무원 1명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13. 1. 10.
- ○○부 조사 결과, ○○시 조치결과에 따름  
※ 통보일자 : 2013. 11. 1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2-130호

**교육청 공무원의 예산횡령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2. 10.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교육청 특수교사들로 교육기자재를 대학 동창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매해주고 리베이트를 받거나 구매수량과 가격을 부풀려 횡령하고, 특수교사 워크숍, 연수과제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수 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특수학생용 교육기자재 등을 특정업체에서 구입하고, 특수교사 워크숍 강사료 등 약 5,0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행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시 교육청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진단평가지 등 재료비를 부풀려 약 3,000여만 원의 횡령 및 부당이득 혐의가 확인되어 업무상배임, 사기 등 의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 송치
- ※ 통보일자 : 2013. 10. 7.
- ○○시 교육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 B는 『○○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시공사 및 사업시행자로 피신고자A는 당초 설계보다 공사를 적게 시공하였고, 피신고자B는 피신고자A가 제출한 준공내역에 공사내용을 허위로 추가하여 공사비를 부당편취하였으며, 피신고자C는 책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A는 설계에 반영된 공사를 축소시공 하여 1억 3,637만 원을 부당편취 하였고, 피신고자B는 실시하지도 않은 공사를 마치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공사비 6억 1,727만 원을 부당편취 하였으며, 피신고자C는 피신고자A, B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하여 수사 및 감사 등이 필요함.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수사결과, 시공관계자와 감리원에 대해 각각 사기,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3. 1. 10.
- 도 조사결과, 시행사측에서 약 1억 1,143만 원 상당의 부당 편취한 공사비가 공탁되었으며 시행사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하고 감리원은 자진 사퇴      ※ 통보일자 : 2012. 12. 1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51호

**사회단체 보조금 횡령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2. 11.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매출전표를 발행받거나, 속칭 “카드깡” 또는 각 지회에 입금해 준 유류대와 식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 천 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하여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는 허위매출전표를 발급받고 물품지원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허위 정산하여 6,472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과 ○○시 보조금으로 4년간 유류비와 식대 5,921만 원 상당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감사원, ○○부, ○○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A,B,C 보조금 1억 5,000만 원 부정사용 확인, 피신고자A “교통질서 캠페인” 비용 8,150만 원 횡령 확인, 피신고자 3명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송치.      ※ 통보일자 : 2013. 3. 22.
- ○○구청 조사 결과, 피신고자D에 대하여 ○○구 화물전용주차장 관리비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한 370만 원 전액 환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조치.      ※ 통보일자 : 2013. 1. 18.
- ○○시 재판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예정      ※ 통보일자 : 2013. 4. 22.
- ○○부 재판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예정      ※ 통보일자 : 2013. 11. 5.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및 ○○구청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2-152호

## 장애인심부름센터장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의혹 등

2분과위원회(2012. 11. 19.)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으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환급금을 ○○시각장애인협회에 넘겨 불법으로 유용하고, 직원 채용시 승급, 보수획정에서 지침을 위반한 의혹이 있고, 감독기관인 ○○시청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으로 가입한 운전자보험 환급금 1,237만 원을 ○○시각장애인협회 예산에 편성하고, 직원의 호봉획정과 직급 승진을 임의대로 조정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이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운전자보험 환급금 유용 및 종사자 호봉획정, 승급시 지침 위반 확인
  - 운전자보험 환급금 약 1,237만 원 보조금 반환 및 시설장 교체 명령(환수 완료 및 시설장 교체 완료)
  - 관련 공무원 4명 문책(2명 경고, 2명 훈계)
- ※ 통보일자 : 2013. 6. 14.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2-153호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2. 11. 19.)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주유소에서 화물차에 주기적으로 기름을 주유하면서, 실제 주유한 기름의 양보다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카드결제 하는 방법으로 약 3,000여만 원의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여 국가예산을 낭비시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주유한 양을 부풀려 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6명의 매출전표 허위발행 및 유가보조금 편취 사실 확인, 피신고자 6명 불구속 기소 송치, (주)○○ 법인 불구속 기소 송치  
 -피신고자 1명(주유소 실운영자) 허위매출전표 2,498만 원 발행 확인  
 -피신고자 5명(화물차 운전차주) 유가보조금 486만 원 허위수령 확인  
 ※ 통보일자 : 2013. 3. 15.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군과 ○○시 소재 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공장 건물면적과 기업신용평가등급 등을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비 및 지방비 등 지원금 수십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해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지방이전을 하면서 ○○부와 지자체로부터 정부 지원금 수십억 원 상당을 허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6명 기업이전보조금과 입지지원보조금을 약 84 억 2,000만 원을 허위청구 하여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통보일자 : 2014. 1.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2-159호

**여성합창단연합회 보조금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2. 12.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여성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와 현수막과 배너 제작비등을 허위 정산하는 방법으로 3,500만 원 상당을 부적정 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합창대회를 개최하며 회계서류를 허위정산 하는 방법으로 합창대회 보조금을 부적정 하게 사용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A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피신고자B,C,D 형사 불입건  
※ 통보일자 : 2013. 5. 30.
- ○○시 조사결과, 보조금 부당 집행액 5,113만 원 확인(환수 진행 중), 담당공무원 3명 신분상 조치(주의2, 훈계1)  
※ 통보일자 : 2013. 6.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발주자의 승낙없이 공정을 일부 생략하고도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 C는 피신고자A가 시방서와 다르게 공사하는 것을 방조·묵인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D는 용접부분이 불합격임에도 서류를 조작하여 합격증을 교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A는 공정을 일부 생략하고 다른 사양의 구조정 납품으로 약 7,4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와 피신고자C는 책임 감리 및 공사감독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신고자D가 수행한 비파괴검사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불명하여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해양경찰청 및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해양경찰 수사 결과, 고의적인 범죄혐의 미발견, 선급금 중 5억 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편취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고자A 기소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13. 4. 9.
- 부 조사 결과, 회계질서 문란, 준공 확인 소홀 등으로 기관에 주의·개선 조치(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및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 포함), 담당자 훈계 조치      ※ 통보일자 : 2013. 8.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2-167호

## 직업전문학교 청년취업 인턴제 국고보조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2. 12. 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고용중이던 근로자를 새로 취업한 청년인 것처럼 위장 신고하고, 권고사직 처리한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다 자진 퇴사한 것처럼 신고하고, 상시 근로자 수를 부풀려 조건을 맞추는 방법으로 약 1,420여 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를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1,050만 원 부정수급 확인,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3. 1. 18.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 1,114만 원 편취 확인
  - 재정상 조치: 반환명령 1,114만 원(환수 진행 중)
  - 행정상 조치 : 인턴지원 협약 해지,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 제도개선 추진 : 인턴지원금 부정수급 예방관리 방안 수립

※ 통보일자 : 2013. 3. 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단으로부터 해외취업연수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 취업 ○○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연수생 12명을 22명으로 부풀려서 과다 청구하고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22명의 연수비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기관 출석부에는 연수생 12명만의 명부만 작성되어 있고, 유사사건에 대해 경찰청의 수사 중인 상태에 있는 등 2011. 7월부터 10월까지 약 5,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부 조사 결과, 연수생 등 10명은 허위연수·허위취업임을 확인, 일부 6명은 71일간 허위로 출석을 연장하는 등 출석 조작 확인, 이에 따라 허위 출결 연수비 89,191천원과 취업정산금 재정산 환수액 약3,058만 원 등 1 억 1,977만 원 환수 조치(환수 완료)  
 ※ 통보일자 : 2013. 1. 29.
- 경찰 수사 결과, 22명분에 해당하는 6,982만 원 편취확인하고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3. 5.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2-179호

## 관급공사 공사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2. 12. 1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신항 준설공사를 시공하며 공정률을 부풀리고, 공사감독일지 등을 허위 작성해 기성공사 대금을 편취하고, 공사감독 공무원들은 금품을 수수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위조계약서 등으로 호퍼준설장비 동원비 편취 및 신항 준설공사의 작업량을 부풀린 개연성이 있고 선금을 미 정산한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호퍼준설장비의 객관적인 실 가격을 조회하여 관세포탈 여부 확인 등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부,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시공회사 대표는 공사비 편취 및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하고, 공무원(4급)은 2,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시공회사 차장은 공사비 편취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3. 4. 5.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제 2 장

#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 부패신고자 보호
- 부패신고자 보상
- 부패신고자 포상







부패신고자 보호





제2013-3호

「○○회」 신고자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 관련  
신분 비공개의무 위반자 징계요청

전원위원회(2013. 1. 21.)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회의 산사태 복구공사비 과다 계상 의혹 등을 ○○시에 신고한 이후, 신분이 공개되어 신고 13시간 만에 피신고기관의 신고 취하 종용으로 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에 신고자 신분공개여부 확인을 요구함.
- 위원회 조사결과 신분공개사실이 확인되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요구인의 신고는 ○○시 신고센터에 전자민원 형식으로 부패행위 신고 접수 후 취하되었다가 다시 위원회에 접수된 사실이 있고, 그 조사 결과 ○○시가 발주하고 ○○회가 수행하는 산사태 복구 공사 중 운반비와 복구 면적 등을 부풀려 공사비 과다 책정 및 불법 임목 별채 등이 확인되므로 보호적격 대상에 포함됨.
- 또한, 최초 신고를 접수 받은 ○○시 직원이 피신고기관인 ○○회 직원에게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였고, ○○회 직원이 제3자에게 재차 신분을 공개함으로써 신고당일 13시간 만에 신고자를 종용하여 신고를 취하시켰다는 점 등은 법 제64조 제1항의 신분비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장 및 ○○회장에게 각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함.

### 3. 결정결과

- 각 징계권자인 ○○시장 및 ○○회장에게 신분비공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

제2013-13호

## 「○○청」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관련 원상회복 요구

전원위원회(2013. 2.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청장이 차장 재직 시 직원 승진을 빌미로 금품요구 및 향응 수수, 직무관련자와의 접대골프, 부하직원에 대한 골프장 예약지시, 청장 취임 후 인사특혜 등 행동강령위반행위를 하였다며 감사원에 신고한 후, 혀위사실 유포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을 사유로 해임처분을 당하였다며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 위원회 조사결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확인되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7항에 따라 ○○청장에게 요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요구인의 신고는 감사원 감사결과 ○○청장의 승진·전보인사 관련 부당지시 및 인사특혜 등이 확인되므로 보호적격 대상에 포함됨.
- 또한, ○○청이 감사원 감사 중에도 자체조사를 통해 요구인의 신고가 혀 위신고라며 요구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점, 경찰에 신고자 확인을 위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고자 특정에 주력한 점, 요구인이 퇴직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의 요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청장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

### 3. 결정결과

- ○○청장에게 요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를 결정

제2013-201호

「○○교육원」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관련  
원상회복 요구

전원위원회(2013. 6. 1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교육원장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 대한민국-○○국 간 개인 물품 배송을 위한 국제등기우편요금 부당 수령, 노트북 등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한 후, 재계약을 거부 당하였다며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 위원회 조사결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확인되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7항에 따라 ○○부 장관에게 요구인에 대한 채용계약을 요구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9항에 따라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요구인의 신고는 위원회 조사결과 ○○교육원장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 행동강령위반행위가 확인되므로 보호적격 대상에 포함됨.
- 또한, ○○교육원장이 신고 후 단 한 차례 작성된 요구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결과로 재계약을 거부하였고, 요구인 이외 제3자들 모두에 대한 재계약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계약서 상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결정은 고용주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본 건 요구인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부 장관에게 요구인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및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

## 3. 결정결과

- ○○부 장관에게 요구인에 대한 채용계약요구 및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를 결정

제2013-310호

## 「○○교육원장 행동강령위반 신고」건 신고자 보호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전원위원회(2013. 9. 9.)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교육원장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를 한 이후 재계약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계약직 근로자인 신고인에 대하여 근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거부한 ○○교육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요구인의 신고는 위원회 조사결과 ○○교육원장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 행동강령위반행위가 확인되므로 보호적격 대상에 포함됨.
- 또한, ○○교육원장이 신고 후 단 한 차례 작성한 근무성적 평가결과로 요구인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였고, 요구인 이외의 제3자들은 모두 재계약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자 보호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교육원장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요구인과 위반자의 주장이 일부 불일치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 과태료 감경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액의 1/2을 감경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3. 결정결과

- 교육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 부과 결정

# 부패신고자 보상





제2013-22호

**「중소기업 대표의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3.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0. 11. 9. 「중소기업 대표의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1. 30.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정부출연금 1억 700여만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정부지원 과제를 추진하면서 거래업체에 허위로 물품구입비 등을 입금하였다가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정부출연금 1억 700여만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1,10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23호

## 「민원담당 공무원과 공모한 보조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3.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3. 7. 「민원담당 공무원과 공모한 보조금 편취」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2. 8.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1억여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군의 축산담당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특정인들에게 각종 농·축산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고 대상자들은 사업비를 허위로 정산하는 등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1억여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15,035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기 포상금 지급액 5,000천원 공제)

제2013-24호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3.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5. 8.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편취」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2. 12. 27.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정부출연금 1억 9,600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주)○○이 ○○청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연구개발과 관계없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인건비를 부당청구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정부출연금 1억 9,6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33,513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25호

## 「공직유관단체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3.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8. 20. 「공직유관단체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1. 25.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2,100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재)○○진흥원이 ○○부의 ○○육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2,1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4,38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26호

「사회복지법인의 국고지원금 횡령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3.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8. 9. 5. 「사회복지법인의 국고지원금 횡령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2. 14.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2,900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사)○○사회복지회가 농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과정에서 공사서류를 위조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2,9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5,994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27호

## 「○○지구 폐기물 처리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3.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0. 7. 5. 「○○지구 폐기물 처리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2. 12. 보상금의 추가지급을 신청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폐기물 처리비용 전액 15억여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공사와 폐기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물류가 적재한 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센터에 입고하지 않고 허위 번호판을 교체해 계근하는 수법 등으로 운반실적을 과다 계상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폐기물 처리비용 전액 15억여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92,525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기 보상금 지급액 86,373천원 공제)

제2013-28호

## 「골재 무단채취 및 ○○공사의 빽인」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3.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7. 5. 「골재 무단채취 및 ○○공사의 빽인」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1. 8.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골재무단채취 금액 6억 7천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주)○○이 ○○공사의 저수지 퇴적토 준설사업 인가조건과 달리 ○○저수지의 골재(모래)를 무단채취하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골재 무단채취 금액 6억 7천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93,621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29호

## 「지방○○청공무원의 허위출장 등 공금횡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3.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7. 21. 「지방○○청공무원의 허위출장 등 공금횡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1. 2.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한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590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지방○○청 복지과장이 국립○○원 행정팀장으로 재직 시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59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1,182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30호

「○○청 관계자의 업무소홀에 따른 예산낭비」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3.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8. 25. 「○○청 관계자의 업무소홀에 따른 예산낭비」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1. 14.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의 계약보증금 1억 1천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부 물품구매 담당자가 구매물품이 모두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검수서를 작성하였고 관련업체는 물품대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의 계약보증금 1억 1천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21,547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31호

##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3.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3. 12.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1. 30.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1,000여만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개방형 감사담당관(공무원)으로 근무한 피신고자들이 실제 출장 간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출장 등록 후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 등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부당수령액 1,0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2,16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32호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3.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8. 20.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1. 10.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340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09 ~ '12년 기관업무추진비를 목적외로 사용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 중 340만원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68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161,  
348호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횡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5. 20., 10.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12. 26.과 2012. 1. 3.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횡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5. 30. 추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620여만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청으로부터 매분기 지원받는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관리자 운영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 620여만원이 환수된 바,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24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차 299천원, 2차 941천원 분할 지급)

제2013-162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부당청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5. 20.)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6. 1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부당청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3. 13.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2,600여만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시공업체 직원 및 책임감리원인 피신고자들이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질조사 용역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는 등 공사비를 부당청구 및 묵인한 의혹 등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당청구한 2,6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5,268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10. 19. 「○○시 영농조합법인의 국고보조금 횡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1. 14.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5억 2,200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주)○○이 ○○시의 특화품목육성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되자 편법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이들과 공모, 협의의 사업비 정산을 통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5억 2,200만원이 환수결정되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단, 환수없이 환수에 관한 법률관계만 확정되었음을 감안, 보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직·간접적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30%를 감액함.

## 3. 결정결과

- 금 27,37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164호

「○○ 관광자원화 사업 보조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5. 20.)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9. 29. 「○○ 관광자원화 사업 보조금 횡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2. 10. 19.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470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주)○○협회의 사무국장이 관광자원화 사업추진 조건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편취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 목)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47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948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165호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등 사적사용 및 국책연구기관 직원의 공용물 사적사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5. 20.)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0. 1. 27. ~ 2011. 8. 26.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등 사적사용 및 국책연구기관 직원의 공용물 사적사용」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3. 20.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등 92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초등학교 교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 ○연구원 직원 등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92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849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166호

「현역군인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5. 20.)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12. 9. 「현역군인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4. 3.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 320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부대의 현역군인들이 당직관이나 행정병 등을 통하여 초과근무내역을 조작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 32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649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225호

## 「하천정비 공사비 부당편취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7. 22.)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2. 14. 「하천정비 공사비 부당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2. 20.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8,300여만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시공업체 임직원 및 관급자재 납품업체 대표 등 피신고자들이 ○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상호 공모하여 식생블럭 등 관급자재를 당초 계약보다 적게 납품하고도 전부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1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 등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공사비 등 1억 8,3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31,758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226호

## 「○○시 및 ○○구 청소년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7. 22.)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0. 5. 20. 「○○시 및 ○○구 청소년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2. 4. 20.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2,000만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협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신고자가 사업비 용도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학습장 진행교관 인원수를 부풀리거나 공사내역서를 허위로 하는 방법 등으로 ○○시와 ○○구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선고된 추징금 2,000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단,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고려하여 30%를 감액하고, 원상회복비용 신청과 관련해서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3. 결정결과

- 금 2,80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227호

## 「사회복지법인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7. 22.)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7. 7. 5. 「사회복지법인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등」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3. 4. 보상금 및 원상회복 소요비용의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부당 사용한 국고보조금 1억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들이 ○○도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을 신축하면서 국고보조금 1억원을 신청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유용하였던 국고보조금 1억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단, 신고자의 실직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인 원상회복 비용 신청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3. 결정결과

- 금 20,00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228호

「산업기술 연구용역 사업비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7. 22.)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1. 24. 「산업기술 연구용역 사업비 횡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6. 21.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정부출연금 8,200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주)○○이 ○○부 산하 한국○○원이 추진하였던 ○○연구용역 사업과정에서 정부출연금 수억원을 횡령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정부출연금 8,2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단, 환수없이 환수에 관한 법률관계만 확정된 관계로 보상금의 50%만 우선 지급함.

## 3. 결정결과

- 금 8,286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229호

## 「국책과제 정부지원금 유용 및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7. 22.)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11. 8. 「국책과제 정부지원금 유용 및 횡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3. 22.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정부출연금 7억 3,200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주)○○이 ○○부와 ○○청의 국책과제 연구사업명목으로 교부 받은 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실적조작의 방법으로 부당 교부받았다는 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 목) 신고로 인정됨.
- 피신고자가 편취한 정부출연금 7억 3,2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99,221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344호

「○○젓갈명산품 육성사업 사업비 편취 등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11. 7. 「○○젓갈명산품 육성사업 사업비 편취 등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8. 22.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4,100여만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사업을 주관하는 ○○대학교 교수 겸 산학협력사업 총괄책임자인 피신고자가 사업예산 중 인건비 비중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여 인건비 등을 편취한 의혹 등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정부출연금 4,1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3. 결정결과

- 금 8,242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345호

##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따른 공공기관 재산손실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1. 9.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따른 공공기관 재산손실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5. 31.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3,500여만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시에 거주하는 피신고자들이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농장, 축사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이를 인지하고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부과한 변상금 등 3,5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7,105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346호

**「장애인 심부름센터 예산의 목적외 사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7. 23. 「장애인 심부름센터 예산의 목적외 사용」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9. 5.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1,200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시 장애인 심부름센터장이 센터 운전원의 보험가입명목으로 교부된 보조금의 환급금을 목적외로 사용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1,2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474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347호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공사 관련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1. 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공사 관련 뇌물수수」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2013. 3. 27. 추가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5억3,300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 환경사업소장 등으로 근무한 피신고자가 자신의 담당부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서 여러 사업자들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하였고 관련 공무원 등이 그 대가로 피신고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의 부패행위로 추징금 5억3,300만원이 선고되었고, 추징금 중 일부 납부가 있어, 위 추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 경우에 해당하여 10% 감액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13,45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349호

## 「조선업체의 정부출연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9. 27. 「조선업체의 정부출연금 횡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8. 20.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횡령된 정부출연금 22억 1,980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국책 연구사업의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청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과제비 20억원을 횡령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정부출연금의 22억 1,980여만원의 환수 결정이 있었는 바, 위 환수 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단, 환수없이 환수에 관한 법률관계만 확정된 관계로 보상금의 50%만 우선 지급함.

### 3. 결정결과

- 금 119,594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428호

## 「직업전문학교 청년취업인턴제 국고보조금 편취」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1.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7. 31. 「직업전문학교 청년취업 인턴제 국고보조금 편취」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9. 5.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1,100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시 직업전문학교장으로 소속근로자를 신규취업청년인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위장신고하거나 상시 근로자 수를 속이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1,1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2,228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429호

**「법원 송달료 환급액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1.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11. 6. 「법원 송달료 환급액 편취」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9. 5.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 등이 편취한 법원 송달료 환급액 5,200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시 송무담당공무원 등이 소송종료 후 법원에서 정산하여 돌려주는 송달료 환급액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편취한 의혹이 있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 등이 편취한 송달료 환급액 5,2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0,404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8. 7. 7. 「○○보훈병원 요양급여 부당편취 등 비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9. 6.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 등이 편취한 요양급여 1억 1천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보훈병원 흉부외과 과장 및 심폐기 펌프 보조기사가 수술용 재료 제조업체 등과 공모하여 장비 구입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구입한 것처럼 한국○○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 등이 편취한 요양급여 1억 1천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1,509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431호

「○○청 구매단가 부당인상」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1.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1. 13. 「○○청 구매단가 부당인상」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8. 23.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 등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물품대금계약차액 3 억 6천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주)○○이 공공기관의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청에 제출되는 가격자료를 위조하여 물품대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 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 등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물품대금계약차액 3 억 6천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57,317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432호

## 「지방○○청 및 ○○공단 직원들의 예산낭비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1.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6. 21. 「지방○○청 및 ○○공단 직원들의 예산낭비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10. 14.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2,200여만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지방○○청 및 ○○공단 직원인 피신고자들이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부당수령 출장비 등 2,2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4,434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433호

「중소기업 지원연구비 횡령 등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1.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8. 9. 9. 「중소기업 지원연구비 횡령 등 비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9. 2. 추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1,100여만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및 제81조 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신고자가 산학연협력연구소 지원연구비를 사무원 인건비 등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 파견 보낸 연구원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횡령한 지원금 1,100여만원이 환수 완료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1,15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490호

## 「민간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2. 23.)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0. 12. 13. 「민간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편취」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9. 3.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9,600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시 소재 ○○병원 원장인 피신고자는 ○○병원의 식당을 임대하였으나 직영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 1억여원을 편취 하였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 수령해 간 요양급여비용 9,6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19,258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3-491호

## 「국립대 교수의 국가 연구용역 사업비 횡령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2. 23.)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1. 26. 「국립대 교수의 국가 연구용역 사업비 횡령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10. 14.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3억 1,100여만원이 환수되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국립대 교수 및 ○○법인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과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용역 사업비를 허위거래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속 법인 등의 제품제조 및 재료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정부출연금 3억 1,1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단, 신고자가 부패행위 실행을 용이하게 해 주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고려하여 10% 감액함

## 3. 결정결과

- 금 44,649천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4. 22.와 2011. 5. 13. 「○○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 청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3. 10. 18.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 등이 편취한 공사대금 등 12억 2,200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주)○○은 ○○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가시설물설치공사에서 당초 계약과 달리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하였음에도 고급공법인 SHEET파일공법을 사용한 것처럼 기성금을 허위청구하여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편취하였다며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 등이 편취한 공사대금 등 12억 2,200여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48,23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부패신고자 포상





제2013-33호

## 「대학교수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금 횡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3.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8. 7. 25. 「대학교수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금 횡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국책연구사업 센터장을 담당하였던 ○○대학교 ○○캠퍼스 교수 등이 관련업체를 동원하여 해당사업의 하나인 교육생 강의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강자 명단 및 사진촬영 등 허위의 정산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편취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법 제2조 제4호 나목) 부패 행위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부패행위자 3명이 구약식 기소되고 8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5,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3-34호

## 「공립고등학교 교사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3.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6. 26. 「공립고등학교 교사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고등학교 교사 김○○등 11명이 학교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 근무확인대장을 조작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법 제2조 제4호 나목) 부패 행위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부패행위자 22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고 편취된 시간외 근무 수당과 가산금 등 1,800여만원이 모두 환수되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5,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3-231호

## 「공기업 간부의 ○○사업 관련 입찰방해 등 부패행위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7. 22.)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9. 3. 「공기업 간부의 ○○사업 관련 입찰방해 등 부패행위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공사 직원이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압력을 행사하여 특정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에도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을 방해하였고, 또한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인사 청탁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의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 제2조 제4호 가목)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부패행위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내부 신고가 아니면 밝혀내기 어려운 위법적인 부패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2,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3-232호

## 「장애인 고용장려금 편취」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7. 22.)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5. 11. 「장애인 고용장려금 편취」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주)○○택배 대표이사가 소속 장애인의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근무상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편취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법 제2조 제4호 나목)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부패행위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편취된 장애인고용장려금 3,600여만원이 환수결정되었으며, 관련지침이 개정되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5,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3-233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편취」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7. 22.)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4. 21.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편취」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주)○○디자인 대표이사가 한국○○공사가 시행한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도 수천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편취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법 제2조 제4호 나목)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부패행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누락된 취약계층 14가구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완료되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5,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3-351호

## 「○○기념사업회 직원의 금품수수」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12. 3. 「○○기념사업회 직원의 금품수수」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사)○○축제협회 사무국장이 축제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제공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축제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낭비하려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법 제2조 제4호 나목)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부패행위자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신고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5,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3-352호

## 「사회복지법인의 국고보조금 횡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8. 11. 13. 「사회복지법인의 국고보조금 횡령」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사회복지법인 ○○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수당명목으로 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법 제2조 제4호 나목)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관련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회복지법인 담당자에게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의 업무행태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5,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3-353호

## 「대기업의 공기업 납품관련 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7. 11. 1. 「대기업의 공기업 납품관련 비리」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주)○○이 ○○공사에 ○○기기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증빙자료를 실제 금액보다 40~50% 상당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억여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법 제2조 제4호 나목) 부패 행위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관련자 2명이 기소되었고, 관련 법조항이 개정되었으며, 대기업의 납품비리를 밝혀내는 공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9,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3-354호

## 「정부투자기관 납품관련 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6. 12. 7. 「정부투자기관 납품관련 비리」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주)○○이 ○○공사에 ○○○접속재를 납품하면서 승인조건을 어기고, 이중계상하여 부풀린 가격을 ○○공사에 청구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법 제2조 제4호 나목)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관련자가 기소되었고,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공사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데 기여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10,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1. 11. 10. 「누릉지기계 제조·설치관련 공사비 부당편취」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주)○○이 한국○○공사 ○○지사가 발주한 누릉지 오븐 제조·설치공사를 시공하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였음에도 정상시공한 것처럼 공사대금 수천만원을 편취하였고 공사관계자는 이를 묵인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법 제2조 제4호 나목)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부패행위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부당편취된 공사대금 2,600여만원이 환수되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금 5,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3-494호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부당 청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2. 23.)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2. 4. 24.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부당 청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군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신고자가 주유소의 매출을 늘리고,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받기 위하여 상호 공모하여, 화물차량에 실제로 주유한 금액보다 매회 10여만원 상당을 부풀려 유가보조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화물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 동 신고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법 제2조 제4호 나목)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부패행위자들이 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위법적인 부패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4,5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 제 3 장

# 공익신고 사건

- 2013년 공익신고 사건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 2013년 공익신고 사건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11년 1월 경 비금속광물 채취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무기성오 니를 ○○시 소재 농경지에 매립하는 등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폐기물관리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과태료 600만원 부과 조치  
※ 통보일자 : 2013. 3.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건설(주) 외 16개 건설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1, 2차 텐키공사 및 '○○다목적댐 텐키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지분, 낙찰 공구를 합의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사전에 지분 및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사실이 확인됨
- 피신고자들이 사전에 지분, 낙찰 공구를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검찰 수사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텐키공사' 및 '○○다목적댐 텐키 공사' 관련 담합 협의에 관하여 ○○건설(주) 등 11개 건설사 및 前 ○○ 건설(주) 대표이사 등 22명(6명 구속) 기소 조치  
※ 조사결과 통보 : 2013. 10. 4.
- '4대강 살리기 사업 2차 텐키공사' 관련 협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5호

## 약국에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의혹

2분과위원회(2013. 2. 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인 ○○약품의 경영자로 판매 영업사원을 다수 고용하여 ○○ 소재 약국들과 거래하면서 의약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국들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지방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내사종결 조치  
※ 조사결과 통보 : 2013. 3. 22.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골재생산업체인 ○○골재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폐수배출 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인근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소홀, 폐기물 불법매립 등이 확인되고,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  
※ 조사결과 통보 : 2013. 3.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8호

## 빌딩 공사현장 석면배출 등 환경오염 의혹

1분과위원회(2013. 2.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소재 건물을 철거하면서 석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일부 석면을 각종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여 불법 처리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석면 조사 미실시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지방경찰청 및 ○○지방고용노동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 조사결과,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조치  
※ 통보일자 : 2013. 3. 5.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1. 의안개요**

- 광역시 소재 약국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근무기간 동안 처방전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도록 지시하여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경찰 수사 결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관할 지검 송치 조치  
※ 조사결과 통보 : 2013. 4. 12.
- 보건복지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1. 의안개요

- 광역시 소재 음식점은 수년간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을 조제하여 전화택배나 직접방문을 통해 판매를 하여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의사 처방없이 스테로이드 성분 함유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 ○○보건소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 결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관할지검 송치 조치  
※ 통보일자 : 2013. 5. 12.
- 보건소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15일 의뢰 조치  
※ 통보일자 : 2013. 3. 20.
- 보건복지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소재 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방사선사(일명 ‘시암기사’)들을 고용하여 수술실에서 영상 방사선 촬영하는 등 의료기사의 업무를 지시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확인되고,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지방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내사종결 조치  
※ 통보일자 : 2013. 6.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29호

##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3. 3. 1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소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피신고자는 무자격자에게 방사선 촬영과 청력검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 또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사 업무 및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서 및 ○○군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벌금 100만원 부과 조치  
※ 조사결과 통보 : 2013. 11. 28.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1. 의안개요

- 개발은 금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 해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대여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 결과, 무협의로 내사종결 조치  
※ 조사결과 통보 : 2013. 6. 2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36호

##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의혹

1분과위원회(2013. 3.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개발은 공사대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받는 대가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 해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대여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 1. 의안개요

- 개발은 금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 해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대여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관할지검 송치 조치  
※ 조사결과 통보 : 2013. 6. 27.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38호

## 도금공장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분과위원회(2013. 3.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도금공장을 운영하는 피신고자는 사람과 동·식물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유해물질인 크롬을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대기 및 수질 배출 시설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조업 및 폐수배출시설 변경사항의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과태료 60만원 부과조치  
※ 통보일자 : 2013. 3. 27.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분과2013-39호

## (주)○○공장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2분과위원회(2013. 3.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유리섬유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신고자는 작업중에 발생되는 폐돌 등이 함유된 유해 폐기물을 자신의 토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해당 토지 위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던 중 지표면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시정명령 조치  
※ 통보일자 : 2013. 4. 1.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건설은 건물의 대수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석면조사 미실시 및 석면의 무단 처리를 하여 국민의 안전을 침해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공사 중 석면조사 미실시 및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840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  
※ 통보일자 : 2013. 5. 16.
- 경찰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51호

## 공장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분과위원회(2013. 4. 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피신고업체는 제품 생산 중에 발생한 화학 폐수를 화장실 하수구로 무단 방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과징금 1,200만원 부과 조치  
※ 통보일자 : 2013. 3. 19.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64호

## 신부전증 환자 유인 의혹

2분과위원회(2013. 5. 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소재 병원 간호사인 피신고자는 특정인을 고용하여 다른 병원에 입원중인 신부전증 환자를 피신고자의 병원으로 유인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소개자와 입원 환자에게 약 30만원의 금품을 지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불법 환자 유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지방경찰청 및 ○○구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 결과, 피신고자와 병원장에게 벌금 각 100만원 부과
- 구 조사결과, 자격정지 15일 조치  
※ 조사결과 통보 : 2013. 9. 5.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분과2013-74호

## ○○ ○○구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3. 5. 20.)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피신고자1은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구가 지정하는 공공처리시설에 운반하여야 함에도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신고자2는 처리 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의 폐기물 불법 운반과 피신고자2의 폐기물 불법 처리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내사종결 조치  
※ 통보일자 : 2013. 10. 17.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96호

##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1분과위원회(2013. 6. 1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광역시 소재 병원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매월 수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거래대금의 현금 25%, 년 1~2회 골프 접대, 1~2회 병원 회식 등 다양하게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 피신고자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거래시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분과2013-97호

##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의혹

1분과위원회(2013. 6. 1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광역시 소재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원 아들 간식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현장 점검 결과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가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다시마, 소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영유아 보육법」을 위반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보건복지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조치  
※ 통보일자 : 2013. 8. 20.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01호

## 비산먼지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1분과위원회(2013. 7. 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금속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신고자는 원료인 철광석의 보관 장소 등에 비산 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아 철광석 가루가 비산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철광석 가루가 함유된 준설토를 공장 부지 내에 매립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미가동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시정명령  
※ 통보일자 : 2013. 7. 1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1. 의안개요**

- 피신고업체는 주유소를 운영하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관할 관청의 토양오염 조사 시 주유소 부지 중 오염도가 높은 곳에 차량 등 방해물을 설치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업체의 토양오염 은폐 및 검사 방해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구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구 조사결과, 정밀조사 명령 조치  
※ 통보일자 : 2013. 9.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26호

## 무허가 냉매가스 판매의혹

1분과위원회(2013. 8. 2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광역시 소재 전자부품 판매점은 고압가스 판매업 허가 없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냉매가스를 판매하여 국민의 안전을 침해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위험 물질인 냉매가스를 위험물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주거 밀집지역에서 허가 없이 판매한 행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기소의견 관할지검 송치 조치  
※ 통보일자 : 2013. 11. 18.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분과2013-127호

## 소나무 무단 벌채 등 산림훼손 의혹

1분과위원회(2013. 8. 2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 소재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를 벌채하거나 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소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의 무허가 수목 벌채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 형사고발 조치, 담당 공무원 4명 징계요구 조치  
※ 조사결과 통보 : 2014. 1. 14.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33호

##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의혹

2분과위원회(2013. 8. 2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작업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구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구 조사결과, 피신고자 개선명령 조치  
※ 조사결과 통보 : 2013. 9. 12.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1. 의안개요**

-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신고자는 유기성 오니류 등을 매립 처리하면서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실시하지 않아 폐기물 처분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폐기물 처분시설 관리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시설 사용중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과징금 2,500만원 부과 조치  
※ 통보일자 : 2013.09.0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35호

## 폐기물 매립장 악취배출 의혹

2분과위원회(2013. 8. 2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에서 산업폐기물을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처리하지 않고 대기 중에 배출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매립가스 배출 등 불법 처리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지방환경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개선명령 조치  
※ 통보일자 : 2013. 9. 3.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분과2013-150호

## 하도급 건설공사 이중계약 및 허위 통보 등 부정 의혹

1분과위원회(2013. 9. 10.)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건설은 하도급업체와 이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에 하도급 계약 내용의 허위청구를 통해 수십억 상당의 기성금을 편취하여 국민의 안전을 침해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하도급업체와 공모하여 이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에서 생굴 도·소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굴껍질을 무단 방치하거나 매립하여 공유수면에 흘러들어 가도록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의 굴 껍질 무단 방치 및 매립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지방해양항만청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지방해양항만청 조사결과,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  
※ 조사현황 통보 : 2013. 9. 26.

### 1. 의안개요

- 구 소재 종합병원의 원장과 유사의료인인 피신고자들은 해당 종합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의 종합병원 위탁 경영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의료법인 설립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구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구 조사결과, 피신고자들 형사고발 조치  
※ 조사결과 통보 : 2013. 12. 2.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사후 관리하는 피신고자는 매립장에서 발생한 유독성 가스를 불법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매립장에서 발생한 유독성 가스를 모아 소각하지 않고 배출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무혐의  
※ 조사결과 통보: 2014. 2.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69호

## 건설폐기물 집하장 등 환경오염 행위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0. 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구 소재 집하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피신고자들은 수집한 건설폐기물을 적법한 시설에 보관하지 아니 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관할 구청에서 정한 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구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구 조사결과, 과태료 총 1,250만원 부과 조치  
※ 통보일자 : 2013.11.01.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70호

## ○○병원의 무면허 물리치료 행위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0. 7.)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피신고자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자를 고용하여 환자들에게 물리치료 행위 등 의료기사의 업무를 지시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무면허 물리치료 행위 지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경찰서 및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내사종결 조치  
※ 조사결과 통보 : 2013. 12. 19.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분과2013-181호

## 광재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0. 21.)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에서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폐기물관리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군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군에서 환경부 유권해석 질의 중  
※ 조사현황 통보 : 2014. 3. 6.

분과2013-191호

##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1. 0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에서 건설페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의 폐기물 불법 보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지방경찰청 및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과태료 2,600만원 부과 조치  
※ 통보일자 : 2013. 11. 13.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분과2013-192호

## 분뇨 수거차량 불법 행위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1. 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분뇨수집·운반업 혀가만 받은 피신고자는 관할 관청의 혀가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수거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분뇨수집 운반차량으로 음식물폐수를 운반하는 등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구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구 조사결과, 과태료 100만원 부과 조치  
※ 통보일자 : 2013.11.18.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93호

##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폐수유출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1. 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생활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피신고자는 ○○소재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에 수집한 페트병 등을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아 악취를 발생시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폐기물 침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구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구 조사결과, 개선명령 조치  
※ 통보일자 : 2013.11.22.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분과2013-194호

## 분뇨영업 허위 허가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1. 0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관할 관청에 사무실 소재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허위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취득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하수도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구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구 조사 결과, 과태료 100만원 부과 조치  
※ 통보일자 : 2013. 11. 18.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195호

## 불법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1. 04.)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업체들은 ○○시에서 골재 및 모래를 생산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 발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업체들의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소홀, 사업장폐기물 발생 미신고, 불법 토석채취 등이 확인되고,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지방경찰청 및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과태료 300만원 부과 조치  
※ 통보일자 : 2013. 11. 14.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축사를 증축하고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일부를 밀폐하지 않아 악취를 배출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의 불법 축사 증축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지방경찰청 및 ○○군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서 조사결과, 기소의견 송치 조치  
※ 통보일자 : 2013. 12. 2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3-209호

## 해양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1.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에서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폐어망,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을 사업장 외에 불법 야적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해양 폐기물 불법 보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개선명령 조치  
※ 통보일자 : 2013. 11. 29.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분과2013-217호

## ○○고속철도 CCTV설치사업 관련 담합 등 부정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2. 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전자는 제품 공급사와 공모하여 허위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CCTV 관련 제품 설계 단가를 부풀려 수십억 상당의 자재대금을 편취하였음
- 품질시험성적 발행기관인 ○○협회는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조작하였고 책임감리단 ○○개발은 제출한 품질시험성적서가 자재사양서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묵인하여 공정한 거래를 침해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상호 공모하여 경쟁업체를 배제한 채 설계단가를 부풀리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3-223호

## 섬유폐기물 불법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2분과위원회(2013. 12. 5.)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피신고자는 섬유폐기물을 불법으로 ○  
○시 소재 공한지에 야적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폐기물을 지정장소 외에 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지방경찰청 및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과징금 1,300만원 부과 조치  
※ 통보일자 : 2013.12.18.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



분과2012-122호

## 폐수오염 및 비산먼지 오염 의혹

2분과위원회(2012. 10. 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토양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사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중금속 폐수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 허가를 받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킨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와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서 및 ○○구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내사종결 조치  
※ 조사결과 통보: 2013. 1. 25.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제3장

공  
익  
신  
고  
사  
건

분과2012-123호

## 무자격 눈썹 문신 시술 의혹

2분과위원회(2012. 10. 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소재 미용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신고자는 인터넷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뒤 눈썹 부위에 문신을 시술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내사종결 조치  
※ 조사결과 통보: 2013. 6. 5.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제 4 장

#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구조

-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보상·구조







공익신고자 보호





분과2013-40호

## 건설공사현장의 사망사고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분과위원회(2013. 3.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지입차주 겸 운전자인 신청인은 ○○소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출입이 금지되는 등 불이익조치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함.

### 2. 의결이유

- 신청인의 공사현장 사망사고 신고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종결처리함.
- 신고내용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신청건은 법 제18조제2호 및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규정된 '각하' 사유에 해당함.

### 3. 의결결과

- 각하

분과2013-230호

## 서울 ○○구 민간 어린이집 공익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분과위원회(2013. 12. 2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년경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중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고, 2010년경 ○○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중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를 허위로 등록한 사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는바, 퇴사 후 신청인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함.

### 2. 의결이유

- 신청인이 2009년과 2010년에 관할 구청에 유선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일인 2011. 9. 30. 이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익신고는 법 시행일 이전의 공익신고이므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3. 의결결과

- 각하

제2013-35호

## 「새마을 금고 임원의 부정선거 의혹」 보호조치 신청

제3차 전원위원회(2013. 3.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새마을금고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 등을 하였고, 해당 새마을금고는 공과금 횡령 혐의를 씌워 신청인을 파면하였는바, 이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면 보호조치를 신청함.

### 2. 심의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화해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화해조서의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화해가 성립됨.

### 3. 결정결과

- 화해

제2013-63호

## 「○○선정 ○○투표 부정의혹」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제5차 전원위원회(2013. 4. 22.)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주)○○가 ○○선정 관련 투표를 실시하면서 국내전화서비스에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된바, 해임의 취소 등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신청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공익신고로 인해 1차적으로 전보 조치의 불이익을 받은 후 위원회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전보하라는 취지의 보호조치의 결정을 받았고, (주)○○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무단결근을 사유로 신청인을 해임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였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병가신청이 일반적으로 승인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무단결근이라는 귀책사유를 만들어 신청인을 해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

### 3. 결정결과

- (주)○○에 신청인 해임 취소 및 원상회복 요구

제2013-297호

## 「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위반 의혹」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제13차 전원위원회(2013. 8. 26.)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신청인들은 ○○대학 부설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중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탄원서를 해당 대학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 제출하였고, 이후 수습기간의 근무평가를 근거로 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는바, 이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신청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들의 탄원 내용이 어린이집 원장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위에 관한 것으로 ○○대학 사무처장에게 제출되었고, 학부모에 의해 관할 관청에 전달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었는바, 신청인들은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용취소 통지만으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학이 임용취소 의사를 철회하여 신청인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하게 되었는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3. 결정결과

- 기각

제2013-324호

## 「○○군 공립 어린이집 공익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제15차 전원위원회(2013. 9. 2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원아의 급·간식비를 횡령한 행위를 관할 군청에 신고하였고, 해당 어린이집에 새로 부임한 원장이 신청인의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채용시험을 빙자하여 신청인을 불합격시켰는바, 이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신청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에 대하여 관할 군청이 조사한 결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확인되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되었는바, 신청인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함.
- 신임 원장이 공익신고 이후에 실시된 보육교사 채용시험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총점 계산 방식을 왜곡하여 신청인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

### 3. 결정결과

- 어린이집 원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불합격조치의 취소 및 원상회복 요구

제2013-325호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공유 의혹」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제3차 전원위원회(2013. 9. 23.)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신청인들은 ○○어린이집을 집단으로 사직하였고, 신청인 중 1명이 재취업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블랙리스트 문건을 제시받으며 사직을 권고 받은 사실이 있는바, 블랙리스트 유포로 인하여 보육교사로 재취업할 기회가 봉쇄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신청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들은 ○○어린이집을 퇴사하기 전에 영유아보육법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후 제기된 민원을 공익신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민원은 해당 어린이집과 신청인들 간의 부당 근로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라고 보기 어려워 공익신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함.
- 위 블랙리스트는 시기적으로 민원제기 전에 이미 유포되었고, 유포 당시 대부분 신청인들은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취업 방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3. 결정결과

- 기각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등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특별활동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 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고 직무교육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신청함.
- 또한 신청인은 공익신고의 조사 과정에서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신분을 노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호조치를 신청함.

### 2. 심의내용

-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인과 면담하여 공익신고 사실을 추궁하면서 신청인의 교육을 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해당 어린이집에 복귀할 의사가 없고 다른 어린이집에 재취업할 예정인바, 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요구할 실익이 소멸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은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 담당 공무원의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화해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화해조서의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화해가 성립됨.

### 3. 결정결과

- 보호조치 신청 각하, 담당 공무원과 화해

제2013-427호

「새마을 금고 임원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제3차 전원위원회(2013. 11. 18.)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 임원의 새마을금고법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후 해당 새마을금고는 경영상 이유로 신청인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인사 조치를 하였는바, 이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호조치를 신청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수사결과 피신고자에게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는바, 신청인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함.
- 신청인과 해당 새마을금고의 제출자료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본 보호조치 신청은 이유 없음.

### 3. 결정결과

- 기각

제2013-475호

「○○교도소 국가기술자격법 등 위반」  
공익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제19차 전원위원회(2013. 12.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교도소 교도관들의 관리 소홀 및 부정·불법 행위를 법무부 등에 신고하였는바, 이로 인해 ○○교도소가 신청인에게 징계처분, 직업 훈련 취소, 교정기관 강제 이송 등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신청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 중에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신고내용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었는바, 신청인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교도소의 징계 이유는 물품변조, 부정물품 수수, 직무방해 등의 이유로 해당 공익신고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

3. 결정결과

- 기각



# 공익신고자 보상·구조





## 2013년 전원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결정 요약

### 1. 개괄

- 2013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건 중 총 487건에 대하여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와 전원위원회 결정을 거쳐 319건 인용 227,708천원을 지급하였고, 168건을 기각하였음.
- 이는 2012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32건, 지급액 28,472천원과 비교하여, 처리 건수는 15배, 지급액은 8배 증가함.

### 2. 건강분야 공익신고 보상금 결정 내용

- 공익침해행위 분야별로 분류하면, 건강분야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건이 260건으로 전체 지급 건의 81.5%, 지급액이 181,390천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9.7%를 차지함.
- 이 중 약국에서 약사 아닌 종업원이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건이 74건, 110,218천원으로 가장 많았음.  
※ 168 기각건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신고에 대한 보상금 신청건임.
- 미용업소·문신업소의 불법 문신 시술 행위, 치과의원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등 의료행위 관련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46건, 18,260천원임.
- 음식점·마트 등에서 쌀, 배추김치, 쇠고기, 과일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건이 70건, 16,416천원, 식품 유통기한 변조, 식품인증표시 무단 사용 행위 등이 39 건, 30,484천원임.
- 그 밖에 건물의 금연구역 미지정,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영업, 생닭의 미포장 판매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건이 31건, 6,012천원임.

### 3. 환경분야 공익신고 보상금 결정 내용

- 환경분야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건은 54건으로 전체 지급 건의 16.9%, 지급액은 32,204천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14.1%를 차지하여 건강 분야의 뒤를 이음.
- 주요 신고내용을 보면 공장 폐수를 바다나 강 등에 무단 방류하는 행위, 각종 폐기물의 불법매립·무단방치,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행위,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소홀히 하는 행위, 농지 불법 전용행위 등임.

### 4. 안전 및 소비자 이익분야 공익신고 보상금 결정 내용

- 안전 및 소비자 이익분야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건은 5건으로 전체 지급 건의 1.6%, 지급액은 14,114천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2%를 차지 함.
- 우선 안전분야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1건으로, 방위산업체의 방사선 기기 관리 등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환경 신고에 대한 보상금 3,264천원을 지급함.
- 소비자 이익분야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4건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가정용 가구 허위·과장 광고, 기업체의 홈페이지 표시의무 위반, 허위 대부업 광고, 무등록 대부업 광고 행위에 대하여 보상금 10,850천원을 지급함.

### 5. 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별 현황

- 2013년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기관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건, %)

구분	합계	국민권익 위원회	타 기관				
			소계	지자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검찰청 경찰청	기타*
2013년	319 (100)	60 (18.8)	259 (81.2)	162 (50.8)	74 (23.2)	19 (6.0)	4 (1.2)

\* 기타(4): 공정거래위원회(1), 원자력안전위원회(1), 지방환경청(2)

제2013-36호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개봉판매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3.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 2명은 2011.10.10., 11.8. ○○약국에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의약품을 개봉 판매하는 행위를 ○○시 보건소에 각각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들이 과징금과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1.7., 같은 해 2.20. 위원회에 각각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들의 신고내용이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해당 약국 개설자에게 과징금 23,940천원 및 벌금 3,000천원, 종업원에게 벌금 도합 1,500천원이 부과되어 전액 납부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과징금 23,940천원의 20%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1차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과징금 11,400천원과 벌금 3,000천원이고, 2차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과징금 12,540천원과 벌금 1,500천원이므로 각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 2명에게 보상금 각각 2,880천원과 2,808천원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4,788천원을 상환하도록 요청

제2013-37호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1)

전원위원회(2013. 3.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약국에서 무자격자인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2012. 6. 5. ○○시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들이 과징금과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1. 7.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해당 약국 개설자에게 과징금 17,100천원 및 벌금 1,000천원, 종업원에게 벌금 1,000천원이 부과되어 전액 납부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과징금 17,100천원의 20%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과징금 17,100천원과 벌금 2,00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3,820천원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3,420천원을 상환하도록 요청

제2013-77호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2)

전원위원회(2013. 5. 6.)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전국 135개 약국에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2012. 4. ~ 9.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들이 과징금과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2.12. ~ 2013.3.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에 과징금 총 549,640천원과 벌금 총 70,000천원 합계 619,640천원의 수입 회복·증대가 발생함.
- 신청인이 자신의 친척과 공모하여 2012. 4. ~ 9.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촬영하고 해당 약국의 약사에게 관할 관청에 제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되었는바,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 3. 결정결과

- 기각

제2013-80호

## 「의료폐기물의 불법 수집·운반」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5. 6.)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환경업체가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운반한 행위를 2012.7.31. ○○지방환경청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 업체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확정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됨에 따라, 2013.3.28.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20,000천원, 과태료 및 가산금 5,250천원 도합 25,250천원이 부과되었으나, 피신고 업체가 납부하지 않고 있어 ○○지방환경청이 피신고자에게 압류처분을 한 상태임.
- 아직 국가의 수입 회복·증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산정된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2,525천원을 지급

제2013-102호

##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5. 6.)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군 소재 환경업체가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를 2012.10.17.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가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3.28.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하였음.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에 과태료 7,2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과태료 7,200천원의 20%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과태료 7,20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1,440천원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1,440천원을 상환하도록 요청

제2013-115호

##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5. 6.)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업체가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행위를 2012.5.8. 국립농산물품질원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들이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3.28.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 및 운영자가 벌금 각 3,000천원이 부과되어 전액 납부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신청인이 동일 신고로 이미 국립농산물품질원으로부터 개별법령에 따라, 500천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원회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700천원을 지급

제2013-140호

## 「식품유통기한 위조 공익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5. 6.)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수산물 가공업체 ○○가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하여 판매한 행위를 2012.4.2.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4.12.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에 과징금 55,2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피신고 업체 및 대표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에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별금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임.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11,040천원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11,040천원을 상환하도록 요청

제2013-265호

## 「어린이 과자류 판매 관련 사행성 광고금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7. 22.)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식품제조업체가 신제품 홍보 시 사행성 광고를 한 행위를 2013.1.25.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 업체가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7.2.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에 과태료 4,0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과태료 4,000천원의 20%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과태료 4,00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800천원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800천원을 상환하도록 요청

제2013-266호

##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7. 22.)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한의사 면허 없이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쑥뜸 시술과 한약을 조제·판매한 행위를 2012.1.18.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7.2.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신고내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벌금 5,0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벌금 5,00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1,000천원을 지급

제2013-270호

##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환자 소개·알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7. 22.)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의원 직원이 소개비를 받고 불법적으로 다른 병원에 환자를 소개한 행위를 2012.10.10. ○○시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5.20.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벌금 6,0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벌금 6,00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1,200천원을 지급

제2013-274호

## 「공익신고 등으로 인한 정직기간 급여 등 신청」 건 관련 구조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7. 22.)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소재 환경업체가 오페수를 무단 방류한 행위를 2012.5.17. ○○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로부터 5.25. 해사 행위 등을 사유로 정직 6월의 처분을 받았는바,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당하였다며 2013.3.27. 위원회에 구조금으로 정직기간의 임금 손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신청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폐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이 부과되고 업체 대표 등에게 벌금이 부과됨.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의 정직처분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정직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2. 9. 1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함.
- 신청인이 해당 업체로부터 임금체불 건과 관련하여 이후 관공서 및 유관기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금원에는 정직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공익신고로 인한 실질적인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3. 결정결과

- 기각

제2013-355호

## 「김 생산공장의 오페수 무단 방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군 소재 수산물 가공업체가 생산과정에 발생한 침전물을 바다로 무단 방류한 행위를 2013.5.7.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가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9.9.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 업체에 과태료 1,1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군에 다른 사람의 동일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기관은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였는바, 보상금 신청이 경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 24조에 따라 보상금을 균분함.  
※ 다른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미신청
- 과태료 1,100천원의 20%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과태료 1,10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110천원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110천원을 상환하도록 요청

제2013-356호

## 「인터넷 쇼핑몰의 가정용 가구 허위·과장 광고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가정용 가구 제품에 대하여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를 2011.9.30.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들이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9.10.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7개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9개 피신고업체들에 과태료 총 45,0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최초의 신고서에는 7개 업체의 공익침해행위만 적시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의 신고가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어 유사한 방법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2개 업체가 추가로 적발되었는바, 위 수입의 회복·증대가 신청인의 신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9개 업체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9,000천원을 지급

제2013-367호

## 「빌딩공사의 석면조사 미실시 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빌딩 리모델링 공사 시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석면과 각종 건설폐기물을 함께 불법 처리한 행위를 2013. 1. 16.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8. 30.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및 가산금 11,025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과태료 및 가산금 11,025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2,205천원을 지급

제2013-368호

## 「건설폐기물 운반·보관 등 관리의무 위반」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건설업체가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회사 차고지로 운반·보관한 행위를 2013. 6. 28.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 업체가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9. 12.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 업체에 과태료 4,0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과태료 4,000천원의 20%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과태료 4,00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800천원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800천원을 상환하도록 요청

제2013-369호

## 「건설 폐목재 배출의무 위반 등」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건설업체가 폐목재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행위를 2013. 5. 20. ○○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 업체가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7. 24.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 업체에 과태료 4,8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과태료 4,800천원의 20%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과태료 4,80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960천원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960천원을 상환하도록 요청

제2013-370호

##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건설업체가 골재 채취 후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농경지 등에 불법 매립한 행위를 2012. 11. 15.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 업체 및 대표가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9. 12.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 업체 및 대표에게 벌금 6,0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벌금 6,00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1,200천원을 지급

제2013-372호

## 「공장 폐수 불법 배출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소재 공장에서 폐수를 하수구에 불법 배출한 행위를 2013. 2. 15.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 업체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9. 12.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 업체에 과징금 12,000원 및 과태료 1,6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과징금 12,000천원 및 과태료 1,600천원의 20%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과징금 12,000천원 및 과태료 1,600천원으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2,720천원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320천원을 상환하도록 요청

제2013-373호

## 「가축 분뇨 불법 배출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축사 운영자가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행위를 2012. 10. 12.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9. 12.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벌금 5,0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벌금 5,00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1,000천원을 지급

제2013-374호

## 「무허가 토석 채취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소재 산림에서 무허가로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한 행위를 2012. 7. 23.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9. 12.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벌금 5,0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신청인이 동일 신고로 이미 ○○로부터 개별법령에 따라 포상금 5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500천원을 지급

제2013-378호

##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의료기관 ○○이 홈페이지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행위를 2011. 10. 29.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 의료기관이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9. 12.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 의료기관에 과징금 3,75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과징금 3,750천원의 20%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과징금 3,75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750천원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750천원을 상환하도록 요청

제2013-400호

## 「무허가 작업장에서 도축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축산물 가공·판매업소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행위를 2013. 2. 21.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 운영자가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9. 12.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 운영자에게 벌금 1,000 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벌금 1,00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200천원을 지급

제2013-401호

## 「기업체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0. 21.)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정수기 업체가 홈페이지 광고에 중도 해약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2013. 2.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가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9. 12.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5,0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과태료 5,00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1,000천원을 지급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사찰 소유자가 허가 받지 않고 농지를 사찰 부지로 사용한 행위를 2012. 7. 18.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9. 10.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농지법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벌금 5,0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벌금 5,00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1,000천원을 지급

제2013-444호

## 「양곡 생산년도 허위표시」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1.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정미소 운영자가 양곡 생산년도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를 2012. 7.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8. 12.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 운영자에게 벌금 5,000천원 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신청인이 동일 신고로 이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개별법령에 따라, 포상금 5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500천원을 지급

제2013-459호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한 정신적 치료비」 구조금 구상권 행사

전원위원회(2013. 11. 18.)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병역대체복무 지정업체에 근무하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2012. 8. 22. 해당업체의 방사선 피폭 작업 환경 등을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병무청,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고, 위원회가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여 구조금 79천원을 지급하였는바,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여부를 결정함.

### 2. 심의내용

-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 가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면 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대위 행사할 금액(79천원)에 비해 소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송달료 및 집행비용 등 300천원 이상)과 노력이 커서 손해배상 대위 소송의 실익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함.

### 3. 결정결과

- 위원회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공익신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

제2013-495호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3)

전원위원회(2013. 12. 23.)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약국 18곳에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를 2012. 2. 14. ~19.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들이 과징금과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12. 5.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해당 약국 개설자 및 종업원 등 피신고자들에게 과징금 총 44,100천원과 벌금 총 3,500천원이 부과되어 전액 납부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신청인이 위 18건과 관련하여 신고 이후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 취하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는바,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고 볼 수 있고, 신고 취하서 제출에는 공익신고와 관련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고 취하자와 신고자를 구분하지 않고 법에 따른 혜택과 자격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은 부당함.

### 3. 결정결과

- 기각

제2013-513호

## 「식품인증표시의 무단사용 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2. 23.)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업체가 HACCP 미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를 2013. 8. 16. ○○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가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9. 10. 위원회에 공의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의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3,0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과태료 3,000천원의 20%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과태료 3,00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600천원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600천원을 상환하도록 요청

제2013-539호

## 「수산폐기물 불법 해양 투기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2. 23.)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수산업자가 굴 수확 후 해안에서 발생한 폐각 등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한 행위를 2012. 5. 12.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12. 5.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벌금 2,5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벌금 2,50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500천원을 지급

제2013-540호

## 「양식장 관리 소홀 행위 등」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3. 12. 23.)

보상심의위원회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재 양식업자가 해삼양식장의 어장 청소를 하지 않고 플라스틱 시설물을 무단 방치한 행위를 2012. 5. 28.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가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에 따라, 2013. 12. 4. 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접수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어장관리법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벌금 2,500천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함.
- 신고로 인한 수입 증대액이 벌금 2,500천원이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500천원을 지급

# 제 5 장

## 예규개정 등 의결사항





제2013-158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전원위원회(2013. 5. 20.)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감시 및 견제를 확대하며,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 2. 심의내용

- 공익침해행위 대상(적용)법률 규정체계 변경 및 대상 확대
- 공익침해행위 예방, 확산방지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 신설
-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관련 정책수립 활용 실태조사 실시
-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 행정처분까지 책임감면의 범위 확대
- 신분공개경위확인 및 책임감면경위확인 등 법적근거 마련
-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보호조치 요구
-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 수입회복·증대가 없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신분비밀보장 위반에 대한 벌칙수준 상향
- 양벌규정 도입

### 3. 의결결과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제2013-158호

## 부패행위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전원위원회(2013. 5. 20.)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내사종결로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 등 내사 종결이 부당하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이를 새로운 신고로 접수하여 조사기관 등에 이첩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패행위신고사무 운영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2. 심의내용

-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의 요지를 내사종결로 통지받고, 새로운 증거자료제출 등 내사종결이 부당하다는 합리적 이유를 명시 하여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새로운 신고로 접수하여 조사기관 등에 이첩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 3. 의결결과

- 「부패행위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의결

제2013-474호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

제20차 전원위원회(2013. 12. 9.)

신고심사심의관

### 1. 의안개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위면직자인 A, B, C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 제83조 및 제89조에 따라 제재하고자 함

제5장

예  
규  
개  
정  
등  
의  
결  
사  
항

### 2. 심의내용

- A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시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출마 후보자로부터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형사처벌받아 의원직에서 퇴직되었으며, B는 공직유관단체 재직시 중소기업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약 3,600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하여 파면되었고, C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시 약 3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사용량을 줄여준 혐의로 형사처벌받아 당연퇴직된 자임
- A, B, C는 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 대상임에도, 퇴직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공공기관에 취업하였음

### 3. 의결결과

- 공공기관의 장에게 A, B, C의 해임을 요구하고 고발하여야 한다고 통보



# 제 6 장

# 기 타





## 전원위원회 보고목록

제1차 전원위원회 2012. 01. 16.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5호	‘12년 부패신고자 보호조치 요구에 대한 관련기관 조치 결과 보고	보호보상과
제2013-6호	농민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 분과위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7호	4대강살리기사업 입찰담합행위 조사관련 부패행위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8호	검찰공무원 직무관련 뇌물수수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9호	4대강살리기 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심사정책과
제2013-10호	○○소각장 대기 자동측정장치 불법 조작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11호	방치폐기물로 대기환경오염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12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 등 이첩·송부사건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차 전원위원회 2013. 2. 18.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14호	외국대학교 국내유치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15호	노인요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16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보조금 편취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17호	철도 전력유도 대책사업 관련 부패행위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18호	석산에서 발생된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19호	외국인 선원 송·출입 업무관련 비리 의혹 등 이첩·송부사건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6장

기  
타

### 제3차 전원위원회 2013. 3. 18.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47호	'13년 부폐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 보고	보호보상과
제2013-48호	법원 송달료 환급액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폐심사과
제2013-49호	우수조달물품 혜택등록을 통한 국가예산 낭비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폐심사과
제2013-50호	○○영상위원회 직원의 예산 횡령 의혹 등 분과위 의결 사항 보고	부폐심사과
제2013-51호	약국에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52호	골재업체의 폐수유출 및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등 분과 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53호	수도사업소 타일 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 이첩·송부사 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폐심사과
제2013-54호	치과의사 필러 등 불법시술 광고 의혹 등 이첩·송부사 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 제4차 전원위원회 2013. 4. 8.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56호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법령위반 의혹 분과위 의결사 항 보고	공익심사정책과
제2013-57호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심사정책과
제2013-58호	대학병원 수술실 무자격 영상 방사선 촬영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59호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 등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60호	도금공장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등 분과 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61호	치과의사 필러 등 불법시술 광고 의혹 등 이첩·송부사 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 제5차 전원위원회 2013. 4. 22.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64호	○○기념사업회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 분과위 의결 사항 보고	부폐심사과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65호	자영업자 전직지원 사업 지원금 등 편취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66호	공공기관 민간위탁 용역비 부당청구 의혹 분과위 의결 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67호	교육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68호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등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69호	○○공사현장 석면 등 건설폐기물 무단 배출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심사정책과
제2013-70호	공장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분과위 의결 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71호	지식경제부 '기술부품 소재개발 사업비' 횡령 의혹 등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 제6차 전원위원회 2013. 5. 6.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152호	'13년 1/4분기 부패신고자 보호 요구에 대한 관련기관 조치결과 보고	보호보상과

### 제7차 전원위원회 2013. 5. 20.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167호	전직 해양경찰청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심사기획과
제2013-168호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169호	도로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170호	공직유관단체장의 횡령 및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171호	공군 전자전 훈련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172호	신부전증 환자 유인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6장

기  
타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173호	파로호 도선운용 지원금 횡령 의혹 등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174호	병의원 간판에 진료과목 불법 표기 의혹 등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 제8차 전원위원회 2013. 6. 3.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183호	○○구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 제9차 전원위원회 2013. 6. 17.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208호	어업보상금 부당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209호	광고물 단속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210호	육군장성의 예산횡령 및 금품수수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211호	민간업체의 청소용역비용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212호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213호	문화축제 행사 보조금 횡령의혹 등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 제10차 전원위원회 2013. 7. 8.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219호	민간업체의 정부용역 연구과제 연구비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220호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221호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심사정책과

### 제11차 전원위원회 2013. 7. 22.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276호	관급공사(방수) 자재비 횡령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277호	우면산 산사태 복구 공사비용 부당 청구 의혹 등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 제12차 전원위원회 2013. 8. 12.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286호	비산먼지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 제13차 전원위원회 2013. 8. 26.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301호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결과 보고	심사기획과
제2013-302호	○○○○○○○○○ 체육회 보조금 횡령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심사기획과
제2013-303호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304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어선피해보상금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305호	벼 대체작목 육성지원사업비 편취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306호	평택 소사별 택지개발사업 관련 공사비 편취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307호	토양오염 은폐 및 검사 방해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308호	장애인 심부름센터장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의혹 등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6장

기  
타

## 제14차 전원위원회 2013. 9. 9.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318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단 사역인부 인건비 편취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심사기획과
제2013-319호	소나무 무단 벌채 등 산림훼손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심사정책과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320호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 제15차 전원위원회 2013. 9. 23.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326호	○○공설시장 운영 관련 부패행위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327호	관급공사 원청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328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군인의 사무용품 대금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329호	공직유관단체장의 횡령 및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 의혹 등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 제16차 전원위원회 2013. 10. 7.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333호	지자체 민간위탁기관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334호	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세무조사 축소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335호	민간어린이집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336호	소나무 무단 벌채 등 산림훼손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심사정책과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337호	철도 전력유도대책사업 관련 부패행위 의혹 등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 제17차 전원위원회 2013. 10. 21.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405호	4대강사업 공기연장 특혜와 지체상금 미부과에 따른 국가예산 손실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406호	국가소송 관련 자문료 과다 지급에 의한 예산낭비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407호	장애인복지단체 지회장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408호	건설폐기물 집하장 등 환경오염 행위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409호	공군 무기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410호	4대강살리기 공사 입찰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 행위 의혹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공익심사정책과

## 제18차 전원위원회 2013. 11. 4.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418호	관급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419호	공직유관단체의 소송지원금 부당 집행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420호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421호	공직유관단체 이사장의 시설물 불법대관 관련 금품수수 등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422호	광재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423호	조달물품 납품관련 부패행위 의혹 등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 제19차 전원위원회 2013. 11. 18.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462호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463호	민간병원의 의료비 부당 청구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464호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465호	건설사업 혜가를 이유로 부당알선 및 금품요구 등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 제20차 전원위원회 2013. 12. 9.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480호	공직유관단체장의 횡령 및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 의혹 이첩사건 재조사 요구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481호	군용 탄피 납품관련 비리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482호	농민의 영농규모화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483호	돼지분뇨의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484호	조달청 등 공무원의 납품검사 관련 부패의혹 등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 제21차 전원위원회 2013. 12. 23.

의안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3-545호	해군 어뢰용 축전지 납품 비리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546호	WPM사업 관련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547호	산업용합원천기술 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 등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548호	○○고속철도 CCTV설치사업 관련 담합 등 부정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심사정책과
제2013-549호	섬유폐기물 불법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의혹 분과위 의결사항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제2013-550호	교육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등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3-551호	대학병원 수술실 무자격 영상 방사선 촬영 의혹 등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공익보호지원과

# 전원위원회 위원 명단

(2013.12.31.기준)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이성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li> <li>· 서울중앙지방법원장</li> </ul>	
부위원장 사무처장	박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li> <li>·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li> <li>· 전라남도 행정부지사</li> </ul>	
부위원장	곽진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국대 정치외교학 교수</li> <li>· 한국 NGO 학회 상임이사</li> </ul>	
부위원장	홍성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li> <li>·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li> <li>· 서울고등법원 판사</li> </ul>	
상임위원	정기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익위 기획조정실장</li> <li>· 권익위 부폐방지국장</li> <li>· 청렴위 제도개선단장</li> </ul>	
상임위원	신영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실 총무비서관</li> <li>·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실</li> <li>· 규제개혁정책관</li> </ul>	
상임위원	정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도 행정부지사</li> <li>·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li> <li>·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li> </ul>	
위 원	황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li> <li>· (현)법무법인 화우 변호사</li> </ul>	
위 원	이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li> <li>· (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li> </ul>	
위 원	이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li> <li>· (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li> </ul>	
위 원	이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li> <li>· (현)법무법인 세종 변호사</li> </ul>	
위 원	유재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법무과장</li> <li>· (현)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li> </ul>	
위 원	이학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li> <li>· (현)법무법인 정인 변호사</li> </ul>	
위 원	조일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li> <li>· (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li> </ul>	
위 원	노재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li> <li>· (현)공주 대학교 특임부총장</li> </ul>	

제6장

기  
타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013.12.31.기준)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구성근거
위원장	곽진영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전원회의 의결
위 원	이내희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당연직
위 원	김창준	·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현) · 법무법인 세경 대표 변호사(현)	위촉직 (비영리민간단체)
위 원	양철웅	· 변호사 · 국가청렴위원회 심사관(전) ·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변호사(현)	위촉직 (법률전문가)
위 원	장윤정	· 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현) · 법무법인 세원 변호사(현)	위촉직 (법률전문가)
위 원	조연주	· 공인회계사 ·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위원(현)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위촉직 (회계전문가)
위 원	박강수	· 감정평가사 · 한국감정평가협회 이사(전) · 나라감정평가법인 부회장(현)	위촉직 (감정평가전문가)



#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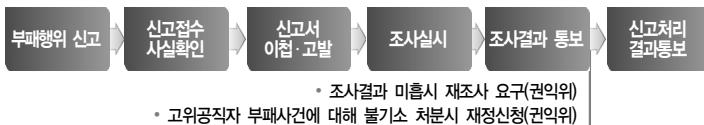


# 공직자의 부패행위, 깨끗하게 해결하겠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

### 부패신고 접수와 처리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6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확인절차를 거쳐 조사기관에 의뢰, 결과를 통보받아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이행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기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행동강령 위반신고

국민 누구나 공직자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행동강령 위반사항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
- 공용물(관용 차량, 선박 등) /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 수수
- 기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알선·청탁,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 부패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는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고 보상금 지급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합니다.

## 공익신고안내

#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

##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9.30.시행)

### ● 「공익침해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이곳에 하세요.

- ① 공익침해행위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② 소관 행정·감독기관
- ③ 수사기관
- ④ 국민권익위원회
- ⑤ 국회의원
- ⑥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단체

### ●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보 호 조 치	신분비밀 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조치

###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 ●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 구조금 지급

###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 됩니다.

제재 유형		위반 유형
징계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li><li>• 불이익 조치를 한 자</li></ul>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li><li>•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li></ul>
	2년이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li><li>•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li></ul>
	1년이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li><li>•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li></ul>

## 보호는 이렇게 해요!

-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B는 수입 금지된 사료용 대구머리 등 수산물을 식용 대구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 전국 백화점, 대형 마트 음식점 등에 10년간 판매하여 수십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 이에 직원 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급자 C에게 상의하였으나 조치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였다.
- A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B는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A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

**TIP** B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0억5,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 ● A의 신고 내용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인 식품위생법 제94조 「벌칙」에 해당

※ 「식품위생법」 제94조수입이 금지된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 A는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의 판결로 추징금 20억 5,000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2억 2,900만원까지의 보상금과 신고로 치료비·이사비·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가능



### ● 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수입업체 대표 B, 관할 시·군·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 해고당한 A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 ● A를 해고한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B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

### 건강 분야

#### AIDS에 감염된 혈액유통

- 혈액관리기관의 잘못된 혈액관리 및 혈액관리로 에이즈(AIDS)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행위 (혈액관리법 위반)
- 관련법률  
의료법 등 45개



###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수천톤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행위(폐기물관리법 위반)
- 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0개



### 소비자 이익 분야

#### 가짜 참기름 유통

- 중국산 참기름과 식용유를 혼합해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한 행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 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24개



### 안전 분야

####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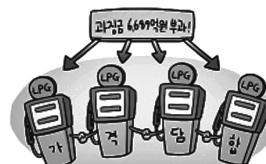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하여 자동차 공업사에 납품하는 행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 관련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6개



### 공정 경쟁 분야

#### LPG 담합

- 정유회사가 6년간 LPG 가격을 담합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관련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 이용안내

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종합민원상담센터)

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국민권익위원회

전화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팩스 | 부패·공익신고 02)360-3551  
고충민원 02)360-3531

인터넷 | 부패·공익신고 [www.acrc.go.kr](http://www.acrc.go.kr)  
고충민원 [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2013년도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제12집)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발행일 : 2014년 4월

인 쇄 :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플러스

Tel. 02) 868-6854

본 부패 · 공익침해 방지 심의 · 의결례집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 02)360-6663 Fax:02) 360-3550



